

시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1722호

2019년 1월 28일 월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규 칙

- 인천광역시규칙 제3099호(인천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전부개정규칙) 3
- 인천광역시규칙 제3100호(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시행규칙) 19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19호(계산 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42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20호(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45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21호(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석모예코종합온천단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47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22호(인천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고시) 58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23호(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60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24호(도시관리계획(문학구획정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정정 고시) 61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25호(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66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12호(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93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28호(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공고) 9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29호(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9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38호(인천도시계획시설(유수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9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46호(공인등록 공고) 9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54호(부동산개발업(현민종합건설) 등록 공고) 10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56호(부동산개발업(동인이앤씨 종합건설) 등록 공고) 10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57호(부동산개발업(에스디 파트너스) 등록 공고) 10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64호(「인천광역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0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65호(도시계획시설(운동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13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66호(2019년도「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참여업체(민간기업대학 등) 선정을 위한 공모 공고) 132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67호(정보통신공사업(케일주식회사) 신규 등록 공고) 15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68호(정보통신공사업자(오성아이씨티) 행정처분) 15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69호(정보통신공사업자(새길정보통신) 행정처분) 154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9-33호(도로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155

예 규

- 인천광역시예규 제467호(인천광역시 시장 공약 관리 규정) 158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9-29호(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62

규 칙

인천광역시규칙(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전부 개정규칙

개정이유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당직근무수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직수당 지급액을 현실화하고,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사문화된 조문들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용어 순화, 조문 간 중첩된 내용 및 법규체계를 정돈하여 현행 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당직책임자의 명칭 및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 시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당직점검 규정 신설 및 근무태만 등 규칙 위반에 대한 처벌조문 신설 (제17조)
- 당직수당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인상 (제18조)
- 비상근무 필수요원지정 규정 신설 (제29조)

인천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년 1 월 28일

인천광역시규칙 제3099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전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6,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소방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는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소방방재청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자[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당직명령권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당직근무 예정일 14일전까지 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명령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출장·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 직급의 교체근무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10분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명령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명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에는 일·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다.

③ 당직책임자(당직근무자 중 선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당직근무 종료 시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당직근무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건·사고 등 당직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사항
2. 주요 민원 접수 및 문서처리 사항
3. 각 사무실 순찰 및 소속기관 점검결과 등

제6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7조(숙직근무자의 휴식 등) 당직명령자는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 전원을 동시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당직실 위치 및 전화 등) ①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방법·방호·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9조(당직차량의 운영)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그 기관의 기능·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각 기관의 당직근무자의 직급 및 근무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11조(재택당직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구축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당직실 및 사무실 대기 근무

② 제1항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의 제외) ① 당직명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당직근무 편성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한 경우. 이 경우 당직근무 편성대상 제외기간은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후 12개월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로 한다.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육아를 위한 경우
3. 업무 특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 편성대상에서 제외 받으려는 공무원은 근무예정일 30일 전까지 소속 부서장을 통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문서로써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즉시 같은 방법으로 당직명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책임자) ①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 중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휴가 3일 이상인 경우와 당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시 본청의 당직책임자의 직급을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방호·방화 및 그 밖에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청원경찰과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소속기관 및 군·구 당직상황의 확인·감독
4.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5. 전화민원의 응대
6. 안보팩스 송·수신 및 소속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7.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② 각 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서 또는 업무 주관 부서의 장에게 연락하거나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나 업무는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문서 취급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사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 혼란 방지 및 질서유지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신속한 조치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에의 연락
2.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당직명령자 및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당직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6조(당직실의 비품) ①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연락망
4. 직장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인천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7.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에는 전화·이동전화·자택주소, 대체 연락처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적혀 있어야 한다.

제17조(당직점검) ① 시장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당직점검자(기관별 당직업무 총괄담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직점검자는 당직근무자의 근무태만 등 이 규칙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당직명령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지적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당직수당) 당직근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1명당 1회에 60,000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을 수행한 경우에는 당직실 및 사무실에서 3시간을 초과하여 대기근무한 경우에 한정하여 30,000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19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에 종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정상근무일로부터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종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비상근무

제20조(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등)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하며, 비상근무의 종류, 요령, 발령 및 해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부터 제2조의5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의 휴무 또는 초과근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 방침에 따라 운영한다.

③ 비상근무 발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비상연락체계) ① 시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시 본청의 당직책임자에게 지시하여 각 기관에 신속하게 연락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직책임자는 그 사항을 소속기관별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제22조(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각 소속기관별 당직책임자는 즉시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각종 통신수단과 당직근무자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직원 비상소집 연락망을 통한 비상소집 실시

2. 소속기관, 군·구,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의 당직실을 통한 비상소집 명령 통보

② 각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책임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비상근무 편성) 각 기관의 장은 평시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제24조(비상근무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등청·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명령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②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비상근무 제외) 시장은 단계별 비상상황에 따라 현업에 종사하는 직원을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6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이 모두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 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책임자는 당직업무를 당직명령자에게 인계할 때까지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명령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7조(상황실 설치) ① 시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시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은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8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소속 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처리자, 통신·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직원 비상연락망의 정비·보완) ① 각 부서의 장은 제28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의 직원 비상연락망을 즉시 정비·보완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복무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연락망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당직근무를 수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당직근무일지

(앞쪽)

. . . . (요일 숙[] 일[] 직)

결재		

당직자	당직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문 서 처 리 상 황						
						종류	발 송			접수	인계	비고
							문서 번호	수신처	제목			
지시 받은 사항			조치 사항									
지시한 사항			조치 결과 확인									
보고 사항			인계 사항	1. 물 품 2. 문 서 3. 기 타								

청사 내·외의 순찰점검사항

순찰시간	발견사실 및 처리개요		순찰자	순찰시간	발견사실 및 처리 개요		순찰자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서명)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서명)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서명)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서명)
연락사항	연락기관	수화자 소속 · 직위(직급)	수화자 성명	송화자 성명	이상 유무		
비 고							

■ [별지 제2호서식]

보 안 점 검 표

부서명:

구분 월일 요일		서류보관상태		청 소 상 태		소 등 상 태	
		최 종 퇴 청 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1. 점검사항별로 이상이 있을 때에는 ×표, 이상이 없을 때에는 ○표 한다.
2.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본표 이면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화기단속상태		문단속상태		점검시각 및 점검				결 재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 무 자	최종퇴청자		당직근무자		
				시 각	성 명	시 각	성 명	

■ [별지 제3호서식]

비상근무 발령서

1. 비상근무의 종류 : 비상근무 제 호
2. 발령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발령 사유 :
4. 대상 지역 및 기관 :
5. 조치사항 :
6. 비상소집 결과 보고 수신부서 :

위와 같이 비상근무를 발령함.

인천광역시장

■ [별지 제4호서식]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기관명:)

구분	총원	응소 대상 인원	응소인원				미응소 인원	응소율 (%)	비 고
			계	1시간 내 응소	2시간 내 응소	2시간 이후 응소			
총 계	계								
	필수 요원								
	일반 직원								
본 청	계								
	필수 요원								
	일반 직원								
소 속 기 관	계								
	필수 요원								
	일반 직원								

작성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보고 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출장·병가·경조사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중앙행정기관의 본부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를 하고, 소속기관 응소현황은 집계와 동시에 본부를 포함하여 총괄 보고(우선 전화 보고 후 서면 보고)한다.

인천광역시규칙(공포)

제 명 :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이유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아트센터 인천」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사용허가 신청을 정기사용과 수시사용으로 구분하고 신청 및 처리방법을 규정함(제2조)
- 사용계약, 사용료 감면 신청, 사용자의 설비 및 홍보물 설치 신청서식 및 신청인에 대한 결과 통지 기한을 명시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 관람권의 기재사항, 전산발매 등을 규정함(제6조)
- 관람료 감면사항에 대한 기준, 유료회원 운영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8조까지)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년 1월 28일

인천광역시규칙 제3100호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의 신청 및 처리) ①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아트센터 인천의 시설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사용과 수시사용으로 구분한다.

- 1. 정기사용: 일정기간 동안 또는 일정 주기로 정기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아트센터 인천의 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일정한 신청기간 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
- 2. 수시사용: 정기사용 일정이 없는 기간에 대하여 수시로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

② 아트센터 인천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연장(콘서트홀 · 다목적홀) 사용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2. 공연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3. 부대시설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4. 부속설비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③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사용 신청의 경우에는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사용허가 결정에 관한 사항을 공연장(콘서트홀·다목적홀)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공연장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계약 체결)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용계약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아트센터 인천 시설 사용 표준계약서에 따른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용자는 청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청장은 7일 이내에 감면 여부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자의 설비 및 홍보물 설치) ① 조례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에 따라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홍보물을 게시하려는 사용자는 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자 설비 설치 승인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2. 현수막(배너) 게시 승인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청장은 그 신청을 받을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권의 발행) 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관람권에 별표 1의 관람자 유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장에게 관람권 검인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한 경우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청장은 관람권 검인대장(별지 제12호서식)에 등재한 후 관람권을 검인한다.

④ 사용자는 공연장 좌석에 따른 관람권 발행에 대하여 발매 전에 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료의 감면) ① 조례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체기획 공연 등(타인과 공동으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대상 및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조례 제2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유료회원의 운영) 조례 제30조에 따라 유료·무료 회원을 운영할 경우에 그 회비 및 혜택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람자 유의사항(제6조제1항 관련)

1. 취학 전 어린이의 입장은 불가합니다.
(다만, 공연에 따라 연령제한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제한 연령을 기재 합니다)
2. 공연 전 입장을 원칙으로 하며 공연이 시작된 이후에는 안내원의 유도에 따라 입장할 수 있습니다.
3. 공연장 안에서는 촬영, 녹음 및 조명을 비추는 등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 공연장 안에서의 흡연, 음주행위 및 소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5. 음식물, 카메라, 꽃다발 등은 객석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 물품보관소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6. 휴대하신 호출기나 휴대용 전화기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7. 공연장 안으로의 화환 반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별표 2]

자체기획공연(행사) 등 관람료 면제기준(제7조제1항 관련)

종 류	대 상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각종 국경일 및 기념일 공연(행사)	○ 기관·단체대표, 일반시민 등
신년 및 송년 공연(행사)	○ 관련 법령에 의한 유공자,
시민의 날 기념,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개청기념, 아트센터 인천 개관 기념 등 시책 홍보 공연(행사)	기관·단체대표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보육료지원대상자, 등록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등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아트센터 인천의 홍보·마케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별표 3]

아트센터 인천 관람료 할인기준(제7조제2항 관련)

할인대상	할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법」 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증 및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 소지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소지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 포함) 	50%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8세 이하), 청소년(9 ~ 24세 이하), 대학교 학생증 소지자 ○ 문화소외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가족 · 그 밖에 시장이 문화소외계층으로 인정하는 자 등 	50% 범위 내 시장이 정한 할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패스 소지자 ○ 유료회원 ○ 20명 이상의 단체 	30% 범위 내 시장이 정한 할인율

※ 할인규정의 중복 적용 불가

[별표 4]

유료·무료 회원제(제8조 관련)

종 류	연회비	혜 택
무료회원	없음	· 전자우편(E-mail)이나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한 공연정보 제공
유료회원	5 만원	· 전자우편(E-mail)이나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한 각종 공연정보 제공 · 자체기획공연 관람 시 프로그램북 제공 · 자체기획공연 관람료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10까지 할인 (공연별 2매 이내)
	10 만원	· 전자우편(E-mail)이나 휴대폰 문자, 공연안내지 등 공연정보 제공 · 자체기획공연 관람 시 프로그램북 제공 · 자체기획공연 관람료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20까지 할인 (공연별 4매 이내)
	200 만원	· 전자우편(E-mail)이나 휴대폰 문자, 공연안내지 등 공연정보 제공 · 자체기획공연 관람 시 프로그램북 제공 · 자체기획공연 관람료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20까지 할인 (공연별 100매 이내)

※ 연회비 및 혜택에 따른 별도 회원 단계별 명칭은 따로 정함.

[별지 제1호서식]

공연장(콘서트홀, 다목적홀) 사용 허가신청서

● 신청인(공연자 또는 공연단체)				
단체(공연자)명			연락처	☎ FAX
대표자 성명	(인)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E-mail:)			

● 신청내용				
공연명			사용(공연) 장소	(콘서트홀, 다목적홀)
준비기간	. . (시)부터	. . (시)까지	()일간 ()시간	공연횟수 (회)
공연기간	. . (시)부터	. . (시)까지	()일간 ()시간	
철수기간	. . (시)부터	. . (시)까지	()일간 ()시간	

● 공연성격 (V 체크)	순수예술	대중예술 ¹⁾ 및 행사 ²⁾	녹음	방송, 영화, CF 등 기타
------------------	------	---------------------------------------	----	-----------------

● 사용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입장료	

● 공연 단체의 주요경력 또는 연혁 (별지첨부)

● 비 고(첨부서류)
공연계획서 1부 사업자 등록증 등 기타서류 1부.

「아트센터 인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 1) 전자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요, 팝 등 대중음악 및 뮤지컬 등을 말함.
- 2) 개인, 영리법인(주식회사, 영리사단법인,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또는 영리법인의 협찬이나 후원을 받은 사용자가 그 영리법인을 위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을 겸한 행사로 공연과 상관없는 진행이 전체 프로그램 시간의 20%이상 차지하거나 등급별 70%이상을 초대석으로 운영하는 좌석등급이 있는 경우를 말함.

[별지 제2호서식]

공 연 계 획 서

공 연 명	
주 최	
주 관	
후 원	
공연 소요시간	
입장권 가격	
미취학 아동 관 램 여 부	
공 연 취 지	

● 공연개요

(별지 첨부)

● 프로그램

(별지 첨부)

● 비 고(첨부서류)

1. 공연상세내용 1부
2. 출연자 및 단체소개서 1부
3. 외국인 국내공연추천서 등 관련서류 각 1부

[별지 제3호서식]

부대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 신청인(공연자 또는 공연단체)

단체(공연자)명		연 락 처	☎ FAX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E-mail:)		

● 신청내용

공 연 명	사용(공연) 장소		
부대시설명	공연(행사)명	사용시간	비 고
오케스트라 리허설룸		. . (시) ~ . . (시) / ()일간 ()시간	
양상블 리허설룸		. . (시) ~ . . (시) / ()일간 ()시간	
리셉션룸		. . (시) ~ . . (시) / ()일간 ()시간	
귀빈실		. . (시) ~ . . (시) / ()일간 ()시간	
개인연습실		. . (시) ~ . . (시) / ()일간 ()시간	
합 계	(신청인은 기재안함)		

● 사용자(단체)의 주요경력 또는 연혁

(별지첨부)

● 비 고(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아트센터 인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트센터 인천 부대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부속설비 사용허가 신청서

(2-1)

● 신청인(공연자 또는 공연단체)			
단체(공연자)명		연 락 처	☎ FAX
대표자성명	(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E-mail:)		

● 부속설비내역 및 사용료								(단위 : 천원, VAT 별도)	
구분	종 류	단위	단가		횟수	기간	금액(원)	비 고	
			콘서트홀	다목적홀					
악기	그랜드 피아노								
	- 스타인웨이 대형피아노(D274)	1일/1대	110	-				조율비 별도(전속 조율사만 조율가능)	
	- 중형그랜드피아노	1일/1대	50	-					
	업라이트피아노	1일/1대	30	30					
	타악기								
무대	- 팀파니/1조(5EA)	1일/1조	90	-					
	덧마루								
	- 오케스트라 편성	1일	90	-				인력비 대관자부담	
	- 합창단 편성	1일	90	-				인력비 대관자부담	
	- 40㎡ 이하	1일	-	50				인력비 대관자부담 콘서트홀 공동사용	
음향	- 10㎡ 추가시	1일	-	30				인력비 대관자부담	
	합창라이저/1조(7EA)	1일	60	60				콘서트홀 공동사용	
	녹음								
	- 2 Track (CD, File, Wave 등 녹음)	1회	50	50				디스크, 저장장치 신청자 부담	
	- Multi Track 녹음	1회	100	100				저장장치 신청자 부담	
	- 외부기자재(음향소스제공)	1회/1대	50	50					
	녹화							DVD 신청자 부담	
	- DVD, File(아트센터 인천 장비)	1회	50	50				Fullshot 녹화	
	- 외부기자재(영상/음향소스제공)	1회/1대	50	50				카메라 2대까지 가능	
	마이크								
	- 무선 마이크	1회/1대	25	25				건전지 사용자 부담	
	- 유선(콘덴서) 마이크	1회/1대	10	10				서스펜션마이크 무료	
	모니터 스피커								
	- 12인치, 15인치	1회/1대	25	25					
	무선인터컴	1일/1대	무료	무료				건전지 사용자 부담	
확성 설치(콘솔 및 유선마이크)									
- 2ch 이하	1일	100	100						
- 3ch 이상	1일	200	200						

(2-2)

● 부속설비내역 및 사용료 (단위 : 천원, VAT 별도)								
구분	종 류	단위	단가(단위천원)		횟수	기간	금액(원)	비 고
			콘서트홀	다목적홀				
	빔프로젝터							
	- Rear Projector (20,000ANSI)	1일	200	-				
	- Front Projector (20,000ANSI)	1일	-	200				
조명	Grand MA 2(light)	1작품	80	80				콘서트홀 공동사용
	Moving LED Light	1일/1대	20	20				
	LED STRIP BAR	1일/1대	20	20				
	FollowSpotLight 1.75kw	1회/1대	30	-				운영인력 대관자부담
	ColorFilter	1작품	100	100				
기타 사용	라디오(인터넷)방송중계 및 녹음	1회공연	300	300				테이프신청자부담
	TV 녹화 / 중계	1회공연	300	300				(지역방송50%할인)
	외벽 현수막	1회공연	승인 조건	승인 조건				
로비 사용	포토존	1일/1개	100	100				
	팬 사인회	1일/1개	150	150				
	현수막		승인 조건	승인 조건				
	배너		승인 조건	승인 조건				
	홍보 및 판촉부스 설치 (추가 설치)	1일/1개 (1일/1개)	80 (100)	80 (100)				
디자인 지원	조명 디자인	1작품	1,000	1,000				크루비용 별도
	음향 디자인	1작품	1,000	1,000				공연일 정상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주의사항

- 기자재 사용은 분야별 담당자 사전 검토에 따라 사용해야 함
- 음악회 공연 및 각 장르 공연에 사용되는 피아노 사용 시 정상적인 연주행위(건반연주)의 사용금지
- 상기 위의 장비 및 기타 자재 사용용도 외 사용 금지
- 상기 내용상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사용요청 시 무대기술 담당팀과 협의 후 사용 결정
- 피아노를 사용하는 공연의 경우 공연의 완성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1회 이상을 조율 하여야 함
- 사전에 요청되지 않은 부속설비는 사용이 거절될 수 있음
- 콘서트홀과 다목적홀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 및 물품에 대하여 콘서트홀 사용자의 사용을 우선으로 함.

「아트센터 인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속설비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공연장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

● 신청인(공연자 또는 공연단체)			
단체(공연자)명		연락처	☎ FAX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E-mail:)		

● 허가내용(변경 전)			
공연명		사용(공연) 장소	
준비기간	. . (시)부터	. . (시)까지 ()일간 ()시간	공연횟수 (회)
공연기간	. . (시)부터	. . (시)까지 ()일간 ()시간	
철수기간	. . (시)부터	. . (시)까지 ()일간 ()시간	

● 신청내용 (변경, 신청)			
변경내용	공연명		사용(공연) 장소
	준비기간	. . (시)부터	. . (시)까지 ()일간 ()시간
	공연기간	. . (시)부터	. . (시)까지 ()일간 ()시간
	철수기간	. . (시)부터	. . (시)까지 ()일간 ()시간
취소	사용료 반환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변경/취소 사유(상세히 기재)

「아트센터 인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연장에 대하여 (사용 변경, 사용취소,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용허가서 및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 등

[별지 제7호서식]

(1/3)

아트센터 인천시설 사용 표준계약서(제3조 관련)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계약담당자” 이라 한다)과 사용자(이하 “계약상대자”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시설사용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담당자” 는 “계약상대자” 의 아래 공연(행사)에 대한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그 사용 권리를 보장한다.

공연(행사)명									
공연(행사)장소									
장르구분	순수예술	대중예술 및 행사			녹음	방송, 영화, CF등 기타			
사용기간 (사용시간)	준비시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간 (시간)
		(시	분	~	시	분)		
	공연시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철수시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부대시설	(세부내역 별첨)								
부속설비	(세부내역 별첨)								
비 고									

2. 사용료 : 총액 원정(₩_____)

※ 사용료는 아트센터 인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 부속 설비 사용은 공연시작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 는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이하 ” 조례 “라 한다)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에 명시된 제반사항과 본 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기본시설 사용료 외에 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신청에 의한 사용료는 공연시작 3일 전까지 아트센터 인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거 납부하여야 한다.
5. 위 계약을 확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계약담당자” , “계약상대자” 가 모두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담당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222
 아트센터 인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인)

“계약상대자”
 주 소 :
 단체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2/3)

부대시설 및 부속설비 세부 사용내역

○ 부대시설

부대시설명	사용시간	사용료 (원, VAT 별도)
오케스트라 리허설룸	. . (시) ~ . . (시)/ ()일간 ()시간	
양상블 리허설룸	. . (시) ~ . . (시)/ ()일간 ()시간	
리셉션룸	. . (시) ~ . . (시)/ ()일간 ()시간	
개인연습실	. . (시) ~ . . (시)/ ()일간 ()시간	
귀빈실	. . (시) ~ . . (시)/ ()일간 ()시간	
합 계		

○ 부속설비

(단위 : 천원, VAT 별도)

구 분	종 류	단 위	단 가		횃 수	기 간	금 액(원)	비 고
			콘서 트홀	다목 적홀				
악기	그랜드 피아노							
	- 스타인웨이 대형피아노(D274)	1일/1대	110	-				조율비 별도(전속 조율사만 조율가능)
	- 중형그랜드피아노	1일/1대	50	-				
	업라이트피아노	1일/1대	30	30				
	타악기							
	- 팀파니/1조(5EA)	1일/1조	90	-				
음향	녹음, 소스 제공							
	- 2 Track (CD, File, Wave 등 녹음)	1회	50	50				디스크, 저장장치 신청자 부담
	- Multi Track 녹음	1회	100	100				저장장치 신청자부담
	- 외부기자재(음향소스제공)	1회/1대	50	50				
	녹화							DVD 신청자 부담
	- DVD, File(아트센터 인천 장비)	1회	50	50				Fullshot 녹화
	- 외부기자재(영상/음향소스제공)	1회/1대	50	50				카메라 2대까지 가능
	마이크							
	- 무선 마이크	1회/1대	25	25				건전지 사용자 부담
	- 유선(콘덴서) 마이크	1회/1대	10	10				서스펜션마이크 무료
	모니터 스피커							
	- 12인치, 15인치	1회/1대	25	25				
	확성 설치(콘솔 및 유선마이크)							
	- 2ch 이하	1일	100	100				
	- 3ch 이상	1일	200	200				
빔프로젝터								
- Rear Projector (20,000ANSI)	1일	200	-					
- Front Projector (20,000ANSI)	1일	-	200					

(3/3)

구분	종 류	단위	단가		횟수	기간	금액(원)	비 고
			콘서트홀	다목적홀				
조명	Grand MA 2(light)	1작품	80	80				콘서트홀 공동사용
	Moving LED Light	1일/1대	20	20				
	LED STRIP BAR	1일/1대	20	20				
	FollowSpotLight 1.75kw	1회/1대	30	-				운영인력 대관자부담
	ColorFilter	1작품	100	100				
무대	덧마루							
	- 오케스트라 편성	1일	90	-				인력비 대관자부담
	- 합창단 편성	1일	90	-				인력비 대관자부담
	- 40㎡ 이하	1일	-	50				인력비 대관자부담 콘서트홀 공동사용
	- 10㎡ 추가시	1일	-	30				인력비 대관자부담
	합창라이저/1조(7EA)	1일	60	60				콘서트홀 공동사용
기타	녹음							
	라디오(인터넷)방송중계 및 녹음	1회공연	300	300				테이프신청자부담
	TV 녹화 / 중계	1회공연	300	300				(지역방송50%할인)
로비 사용	포토존	1일/1개	100	100				
	팬 사인회	1일/1개	150	150				
	홍보 및 판촉부스 설치	1일/1개	80	80				
	(추가 설치)	(1일/1개)	(100)	(100)				
디자인 지원	조명 디자인	1작품	1,000	1,000				크루비용 별도
	음향 디자인	1작품	1,000	1,000				공연일 정상 가능한 경우에 한함
합 계								

[별지 제8호서식]

사용료 감면신청서

단체명 (공연자)		연락처	☎ (FAX)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공연명					
공연내용	(별지첨부)				
준비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공연기간 및 공연횟수	년	월	일	시부터	출연 및 참가예정 인원수
	년	월	일	시까지	
	(총 회)				
시설 및 부속설비	기본시설				
	부대시설				
	부속설비				
감면신청 사유					

「아트센터 인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사용자 설비 설치 승인신청서

● 신청인(사용자 또는 사용단체)

단체(공연자)명		연락처	☎ FAX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승인신청내역

공 연 명	
설 비 내 역	
설 치 목 적	
설 치 기 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아트센터 인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상기 설비에 대한 설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현수막(배너) 게시 승인신청서

● 신청인(사용자 또는 사용단체)			
단체(공연자)명		연락처	☎ FAX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승인신청내역			
공연명			
게시위치			
게시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아트센터 인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현수막(배너) 게시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관람권 검인신청서

● 신청인(사용자 또는 사용단체)			
단체(공연자)명		연락처	☎ FAX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공연명			
공연장소			
공연기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관람권 검인내역			
구분 입장권	검인요청		비고
	수량	금액(원)	
석원권			
소계			
합계			

「아트센터 인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19호

계산 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계산 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개발법」 제4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수립하고 고시하며,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019. 1. 28.

인 천 광 역 시 장

I.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 없음)

- 명칭: 계산 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산52-11번지 일원
- 면적: 21,926㎡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통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의료단지 조성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없음)

- 성명: 김홍용
- 주소: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화합로 1049-56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 시행기간(변경)
 - 기정: 2016. 2. 1. ~ 2019. 1.31.
 - 변경: 2016. 2. 1. ~ 2020. 1.31.
- 시행방법: 수용 또는 사용 방식(변경 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 게재 생략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 게재 생략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게재 생략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변경 없음)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개발계획과, ☎ 032-440-4652)
인천광역시 계양구청(도시재생과, ☎ 032-450-8364)

- 열람내용: 개발계획 수립(변경)
-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게재 생략

12. 교통처리계획(변경 없음)

- 게재 생략

II. 실시계획(변경) 인가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명칭: 계산 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통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의료단지 조성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산52-11번지 일원
- 면적: 21,926㎡

4. 시행자(변경 없음)

- 성명: 김홍용
- 주소: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화합로 1049-56

5. 시행기간(변경)

- 기정: 2016. 2. 1. ~ 2019. 1.31.
- 변경: 2016. 2. 1. ~ 2020. 1.31.

6. 시행방식(변경 없음)

- 수용 또는 사용 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 없음)

- 게재 생략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인천광역시청(개발계획과, ☎ 032-440-4652)
인천광역시 계양구청(도시재생과, ☎ 032-450-8364)
- 공람내용: 실시계획(변경) 인가
- 관계도서: 공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9.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10.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기부채납)분 공공시설조서(변경 없음)

- 게재 생략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20호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114-14번지 일원을 「온천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균형계획과, ☎032-440-4615), 강화군청(도시개발과, ☎032-930-380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1. 28.

인 천 광 역 시 장

1. 명칭 : 온천원보호지구(석모에코종합온천단지)
2.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114-14번지 일원
3. 면적 : 670,956㎡
4. 지정사유
 - 본 지구는 온천원 부존자원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5. 지형도면 :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21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석모에코종합온천단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균형계획과, ☎032-440-4615), 강화군청(도시개발과, ☎032-930-380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1. 28.

인천광역시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하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114-14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①	석모에코 종합온천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114-14번지 일원	-	증)147,000	147,00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m ²)	변경사유
신설	①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114-14번지 일원	147,000	온천지구 조성을 통해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함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 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관리 지역	소계	147,000	-	147,000	100.0
	보전관리지역	-	-	-	-
	생산관리지역	-	-	-	-
	계획관리지역	147,000	-	147,000	100.0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에 따름)

○ 강화군수를 통해 도로, 녹지 등 시설물 인허가 및 관리기관(부서)과 협의하여 무상귀속 또는 공용부분 설정 및 지목설정 등을 조치한 후 관리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 조서

(1) 숙박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m ²)	
H-1	H-1	9,326	①	매음리 114-128	542	
			②	매음리 114-126	878	
			③	매음리 114-125	582	
			④	매음리 114-137, 259, 191	515	
			⑤	매음리 114-214	339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m ²)				
H-1	H-1	9,326	⑥	매음리 114-180	514				
			⑦	매음리 114-195	351				
			⑧	매음리 114-196	351				
			⑨	매음리 114-184	351				
			⑩	매음리 114-185	328				
			⑪	매음리 114-197	335				
			⑫	매음리 114-243	456				
			⑬	매음리 114-244	385				
			⑭	매음리 114-244	385				
			⑮	매음리 114-198	384				
			⑯	매음리 114-186	385				
			⑰	매음리 114-187	320				
			⑱	매음리 114-199	320				
			⑲	매음리 114-200	320				
			⑳	매음리 114-201	320				
			㉑	매음리 114-202	320				
			㉒	매음리 114-203	320				
			㉓	매음리 114-204	325				
			H-2	H-2	2,205	①	매음리 114-141, 142	337	
						②	매음리 114-142	398	
						③	매음리 114-218	374	
						④	매음리 114-142, 143	351	
						⑤		387	
⑥	358								
H-3	H-3	2,913	①	매음리 114-241, 242, 227, 228 240, 256, 257	1,009				
			②	매음리 114-144	377				
			③	매음리 114-147	424				
			④	매음리 114-219	350				
			⑤	매음리 114-193	308				
			⑥	매음리 114-146, 145	445				
H-4	H-4	1,920	①	매음리 114-194	308				
			②	매음리 114-225	308				
			③	매음리 114-226	346				
			④	매음리 114-224	341				
			⑤	매음리 114-223	308				
			⑥	매음리 114-222	309				
H-5	H-5	2,003	①	매음리 114-129, 192	299				
			②	매음리 114-230	575				
			③	매음리 114-231	553				
			④		361				
			⑤	매음리 114-213	215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m ²)	
H-6	H-6	1,846	①	매음리 114-150	400	
			②	매음리 114-220	390	
			③	매음리 114-13, 264	336	
			④	매음리 114-13	360	
			⑤		360	
H-7	H-7	3,641	①	매음리 114-258	1,382	
			②		1,358	
			③	매음리 114-258, 235	901	
H-8	H-8	3,468	①	매음리 114-258	2,717	
			②		751	
H-9	H-9	761	-	매음리 114-258	761	
H-10	H-10	721	-	매음리 114-258	721	
H-11	H-11	2,243	①	매음리 114-258	898	
			②		1,345	
H-12	H-12	7,470	①	매음리 114-156, 140	388	
			②	매음리 114-157	350	
			③	매음리 114-158	350	
			④	매음리 114-159	479	
			⑤	매음리 114-160	296	
			⑥	매음리 114-161	300	
			⑦	매음리 114-162	293	
			⑧	매음리 114-163	293	
			⑨	매음리 114-164	356	
			⑩	매음리 114-165	427	
			⑪	매음리 114-166	394	
			⑫	매음리 114-167	324	
			⑬	매음리 114-168	301	
			⑭	매음리 114-169	290	
			⑮	매음리 114-170	290	
			⑯	매음리 114-171	291	
			⑰	매음리 114-172	291	
			⑱	매음리 114-173	291	
			⑲	매음리 114-174	293	
			⑳	매음리 114-175	294	
			㉑	매음리 114-176	293	
			㉒	매음리 114-177	293	
			㉓	매음리 114-178	293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m ²)	
H-13	H-13	2,894	①	매음리 114-221	288	
			②	매음리 114-153	288	
			③	매음리 114-154	289	
			④	매음리 114-155	291	
			⑤	매음리 114-245	289	
			⑥	매음리 114-247	350	
			⑦	매음리 114-206	357	
			⑧	매음리 114-207	351	
			⑨	매음리 114-248	391	
H-14	H-14	3,171	①	매음리 114-188	290	
			②	매음리 114-212	360	
			③	매음리 114-211	351	
			④	매음리 114-190	350	
			⑤	매음리 114-252	349	
			⑥	매음리 114-210	379	
			⑦	매음리 114-209	367	
			⑧	매음리 114-208	364	
			⑨	매음리 114-189	361	
H-15	H-15	1,452	-	매음리 114-14	1,452	
H-16	H-16	1,497	-		1,497	
H-17	H-17	1,469	-		1,469	
H-18	H-18	1,138	-		1,138	
H-19	H-19	1,147	-		1,147	

(2) 상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m ²)	
C-1	C-1	1,292	①	매음리 114-130	420	
			②	매음리 114-232	436	
			③	매음리 114-233	436	
C-2	C-2	729	-	매음리 114-238, 234	729	
C-3	C-3	1,149	①	매음리 114-234	247	
			②		439	
			③	매음리 114-253	463	
C-4	C-4	930	①	매음리 114-217, 215	465	
			②	매음리 114-216	465	
C-5	C-5	306	-	매음리 114-139	306	
C-6	C-6	1,756	①	매음리 114-14	796	
			②		960	

(3) 컨벤션센터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m ²)	
V-1	V-1	3,450	-	매음리 114-258, 139	3,450	

(4) 온천장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m ²)	
T-1	T-1	15,900	-	매음리 114-14, 15	15,900	

(5) 녹지용지

○ 공원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m ²)	
Pk-1	Pk-1	2,933	-	매음리 114-12, 131, 234, 239	2,933	
Pk-2	Pk-2	2,855	-	매음리 114-13, 140, 149, 264, 265	2,855	
Pk-3	Pk-3	2,855	-	매음리 114-258	2,855	

○ 녹지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m ²)	
G-1	G-1	384	-	매음리 114-136, 12	384	
G-2	G-2	111	-	매음리 114-142	111	
G-3	G-3	603	-	매음리 114-142	603	
G-4	G-4	241	-	매음리 114-222	241	
G-5	G-5	1,274	-	매음리 114-148, 236, 237, 234	1,274	
G-6	G-6	1,111	-	매음리 114-151, 183	1,111	
G-7	G-7	1,885	-	매음리 114-139, 182, 258	1,885	
G-8	G-8	448	-	매음리 114-258	448	
G-9	G-9	646	-	매음리 114-258	646	
G-10	G-10	5,359	-	매음리 114-11, 50, 235, 258	5,359	
G-11	G-11	634	-	매음리 114-152, 140	634	
G-12	G-12	1,051	-	매음리 114-14	1,051	
G-13	G-13	851	-	매음리 114-179	851	
G-14	G-14	291	-	매음리 114-251	291	
G-15	G-15	7,907	-	매음리 114-14, 15	7,907	
G-16	G-16	4,821	-	매음리 114-14	4,821	
G-17	G-17	8,083	-	매음리 114-14, 15	8,083	

(6) 공공시설용지

○ 도로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m ²)	
R-1	R-1	5,525	-	매음리 114-12, 142, 140	5,525	
R-2	R-2	5,676	-	매음리 114-12, 14, 138, 140, 182, 205, 229, 231, 234, 239	5,676	
R-3	R-3	5,675	-	매음리 114-182, 246, 250, 258	5,675	
R-4	R-4	2,204	-	매음리 114-14	2,204	
R-5	R-5	1,455	-	매음리 114-14	1,455	
R-6	R-6	131	-	매음리 114-249, 14	131	보행자 전용도로
R-7	R-7	544	-	매음리 114-182, 246, 258	544	보행자 전용도로

○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m ²)	
P-1	P-1	900	-	매음리 114-258	900	

○ 저류시설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m ²)	
U-1	U-1	3,750	-	매음리 114-179, 258	3,750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1) 숙박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H-1 ~ H19	H-1 ~ H19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관광진흥법」 제3조1항 제2호 및 제3호,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 이하 (H-15~19는 60% 이하) 		
		용 적 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 이하 (H-15~19는 200% 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층 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표1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표2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표3 		
건 축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1m (H7-H11의 경우 기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건축 허가를 득한 사항으로 강화군 건축조례를 적용(0.5m)하고 추후 건축물 신축시 1m를 적용) 				

(2) 상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C-1 ~ C-6	C-1 ~ C-6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관광진흥법」 제3조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 이하 (C-6은 60% 이하) 		
		용 적 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 이하 (C-6은 200% 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층 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표1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표2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표3 		
건 축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1m 				

(3) 컨벤션센터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V-1	V-1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관광진흥법」 제3조1항 제3호 및 제4호,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별표1		
		형 태	• 별표2		
		색 채	• 별표3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1m				

(4) 온천장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T-1	T-1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관광진흥법」 제3조1항 제3호,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별표1		
		형 태	• 별표2		
		색 채	• 별표3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1m				

다)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차량출입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H-1 ~ 19, C-1 ~ 6, V-1, T-1, P-1	H-1 ~ 19, C-1 ~ 6, V-1, T-1, P-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출입불허구간 - 도로모퉀이, 교차로 등 차량흐름 및 보행안전에 지장이 예상되는 구간 - 12m 도로에 접하여 있는 숙박시설 전체 구간 	

(2)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경미한 사항	비 고
H-1 ~ 19, C-1 ~ 6, V-1, T-1, Pk-1 ~ 3, G-1 ~ 17, R-1 ~ 7, P-1	H-1 ~ 19, C-1 ~ 6, V-1, T-1, Pk-1 ~ 3, G-1 ~ 17, R-1 ~ 7, P-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1. 건축물의 배치(권장)

위 치	계 획 내 용
H-1 ~ 19, C-1 ~ 6, V-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전면은 접한 전면가로와 일치하도록 하고 가각에 접한 대지에서는 건축물의 주 출입구와 접해있는 전면도로와 건축물의 방향이 일치하도록 배치 (한옥형 숙박용도 건축물은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예외) 주변 자연환경(구릉지, 하천, 농경지)과 어우러지고 시각통로 확보 및 관광객에게 개방감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배치
T-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향 또는 동남향 위주의 배치 주변 자연환경(구릉지, 하천, 농경지)과 어우러지고 시각통로 확보 및 관광객에게 개방감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배치 획일적인 배치는 지양하여 단조로운 단지이미지 탈피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22호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고시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 수수료와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시 소요되는 현장 출장 경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8일

인천광역시

장

1. 2019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 붙임
 2. 현장 출장 경비
 - 가. 시내(구)지역 : 104,000원
 - 나. 시외(군)지역 : 208,000원
 3. 도서지역 시험의뢰 시 현장출장에 따른 선박이용료, 숙박료 및 기타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징수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032-440-53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구 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수수료(원)	소요기간	구 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수수료(원)	소요기간
성토용흙	함 수 비	KSF2306	20,000	6일	콘크리트용 골 재	염 화 물	KSF2515	30,300	5일
	밀 도	KSF2308	56,100	7일		유기 불순물	KSF2510	22,900	5일
	액 성 한 계	KSF2303	61,100	5일	콘크리트 돌	형 상 치 수	KSF4004	10,400	4일
	소 성 한 계	KSF2303	42,200	5일		압 축 강 도	KSF4004	27,700	4일
	씻 기 시 험	KSF2309	40,100	4일		흡 수 율	KSF4004	57,600	5일
	다 짐	KSF2312	196,500	4일	콘크리트 블	형 상 치 수	KSF4002	11,000	4일
	실 내 C B R	KSF2320	335,000	10일		압 축 강 도	KSF4002	24,000	4일
				흡 수 율		KSF4002	51,200	5일	
노 체	함 수 비	KSF2306	19,700	6일	굳지아니한 콘크리트 (레미콘포함)	압 축 강 도	KSF2405	13,900	실소요일
	다 짐	KSF2312	176,500	4일		휨 강 도	KSF2408	77,400	실소요일
	현장 들밀도	KSF2311	76,500	4일		코 아 두 께	KSF2412	208,000	3일
	평 판 재 하	KSF2310	173,000	4일					
노 상	함 수 비	KSF2306	19,700	6일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중간층용)	안 정 도	KSF2337	75,000	4일
	다 짐	KSF2312	169,500	4일		호 림 값	KSF2337	75,000	4일
	현장 들밀도	KSF2311	76,000	4일		다 짐 횡 수	KSF2337	37,300	4일
	평 판 재 하	KSF2310	173,000	4일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안 정 도	KSF2337	75,000	4일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체 가 림	KSF2502	192,000	5일	콘크리트 (표층용)	호 림 값	KSF2337	75,000	4일
	밀도및흡수율	KSF 2503 KSF 2504	50,600	7일		다 짐 횡 수	KSF2337	37,800	4일
	함 수 비	KSF2306	19,700	6일		플 렌 트 혼 합 물	추출 체가림	KSF2502	131,800
	다 짐	KSF2312	174,400	4일	혼합물의 포 설	아스팔트함량	KSF2354	126,800	5일
	현장 들밀도	KSF2311	76,000	4일		코아채취두께	KSF2367	129,000	4일
	평 판 재 하	KSF2310	173,000	4일		밀 도	KSF2446	62,900	4일
	실 내 C B R	KSF2320	306,600	10일	콘크리트 경계블록	형 상 치 수	KSF4006	10,000	4일
	마 모 율	KSF2508	64,600	6일		휨 강 도	KSF4006	36,300	4일
	0.08mm통과율	KSF2511	34,900	4일		흡 수 율	KSF4006	40,600	5일
입도조정 기 층	체 가 림	KSF2502	193,800	5일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 록	형 상 치 수	KSF4419	10,000	4일
	밀도및흡수율	KSF 2503 KSF 2504	50,800	7일		휨 강 도	KSF4419	36,400	4일
	함 수 비	KSF2306	19,700	6일		흡 수 율	KSF4419	42,700	5일
	다 짐	KSF2312	174,400	4일	호 안 용 블 록	형 상 치 수	KCPI001	28,200	4일
	현장 들밀도	KSF2311	76,000	4일		압 축 강 도	KCPI001	25,100	4일
	평 판 재 하	KSF2310	173,000	4일		흡 수 율	KCPI001	60,200	5일
	실 내 C B R	KSF2320	306,600	10일	석 재	압 축 강 도	KSF2519	32,200	5일
	안 정 성	KSF2507	121,400	15일		비중및흡수율	KSF2518	50,700	7일
	마 모 율	KSF2508	63,200	6일	보통벽돌 (치장·점토)	형 상 치 수	KSL4201	11,500	4일
	0.08mm통과율	KSF2511	30,100	4일		압 축 강 도	KSL4201	38,200	4일
콘크리트용 골 재	용 적 질 량	KSF2505	22,600	6일		흡 수 율	KSL4201	48,900	5일
	표 면 수 량	KSF2509	37,300	4일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23호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7-1호 남창가곡 보유자(도상구) 및 제3호 인천근해 갯가노래 뱃노래 명예보유자(조두영) 사망에 따른 인정은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 23.

인 천 광 역 시 장

1. 해제대상

지정번호	문화재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지정일	해제일
제7-1호	남창가곡	도상구	남	1920.3.3.	1995.11.14	2018.10.13
제3호	인천근해 갯가노래 뱃노래	조두영	남	1918.11.17	1994.11.4	2018.12.22

2. 해제사유 : 사망

3. 연 락 처

-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 주 소 : (2223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599

▷ 연락처 : 전화 032-440-4489, 팩스 032-440-8099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24호

도시관리계획(문학구획정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정정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353호(2018. 12. 31.)로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문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중 일부 잘못 표기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균형계획과, ☎032-440-4634), 미추홀구청(도시창생과, ☎032-880-4488)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1. 28.

인 천 광 역 시 장

3. 도시관리계획(문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당초]

(1) 단독주택 용지(D)

가구 번호	면적(m ²)	기정		비고	가구 번호	면적(m ²)	변경		비고	
		필 지					필 지			
		위치	면적(m ²)				위치	면적(m ²)		
52	4,506.9	문학동 373-4	147.3	2필지로 분할가능	52	4,506.9	문학동 373-4	147.3	-	
		문학동 373-3	286.0				문학동 373-3	286.0		
		문학동 373-25	264.9				문학동 373-25	264.9		
		문학동 373-1	183.8				문학동 373-1	183.8		
		문학동 373-2	139.3				문학동 373-2	139.3		
		문학동 373-6	157.2				문학동 373-6	157.2		
		문학동 373-7	218.9				문학동 373-7	218.9		
		문학동 373-8	165.7				문학동 373-8	165.7		
		문학동 373-10	405.8				문학동 373-10	405.8		
		문학동 373-11	283.3				문학동 373-11	283.3		
		문학동 373-12	38.5				문학동 373-12	38.5		공동개발 (지정)
		문학동 373-14	230.6				문학동 373-14	230.6		
		문학동 373-26	7.6				공동개발 (지정)	문학동 373-26		7.6
문학동 373-13	115.7	문학동 373-13	115.7							
문학동 373-27	144.2	문학동 373-27	144.2							
52	4,506.9	문학동 373-20	154.7	도로	52	4,506.9	문학동 373-20	154.7	도로	
		문학동 373-29	11.4				문학동 373-29	11.4		
		문학동 373-15	505.0				문학동 373-15	505.0		
		문학동 373-9	314.9				문학동 373-9	314.9		
		문학동 373-21	201.9				문학동 373-21	201.9		
		문학동 373-23	197.2				문학동 373-23	197.2		
		문학동 373-18	161.5				문학동 373-18	161.5		
		문학동 373-24	171.5				문학동 373-24	171.5		

(3) 준주거 용지(B)

가구 번호	면적(m ²)	기정		비고	가구 번호	면적(m ²)	변경		비고
		필 지					필 지		
		위치	면적(m ²)				위치	면적(m ²)	
19-1	3,461.5	문학동 346-10	257.2		19-1	3,461.5	문학동 346-10	257.2	
		문학동 346-9	167.6				문학동 346-9	167.6	
		문학동 346-11	344.4				문학동 346-11	344.4	
		문학동 346-12	314.8				문학동 346-12	314.8	
		문학동 346-15	344.8				문학동 346-15	344.8	
		문학동 346-14	314.4				문학동 346-14	314.4	
		문학동 346-16	302.2				문학동 346-16	302.2	
		문학동 346-17	302.2				문학동 346-17	302.2	
		문학동 346-18	197.7				문학동 346-18	197.7	
		문학동 346-19	244.8				문학동 346-19	244.8	
		문학동 346-22	258.0				문학동 346-22	258.0	

가구 번호	면적(m ²)	기정		비고	가구 번호	면적(m ²)	변경		비고
		필지					필지		
		위치	면적(m ²)				위치	면적(m ²)	
19-1	3,461.5	문학동 346-21	185.5		19-1	3,461.5	문학동 346-21	185.5	
		문학동 346-20	227.9				문학동 346-20	227.9	
		문학동 346-12	314.8				문학동 346-12	314.8	
		문학동 346-15	344.8				문학동 346-15	344.8	
		문학동 346-14	314.4				문학동 346-14	314.4	
		문학동 346-16	302.2				문학동 346-16	302.2	
		문학동 346-17	302.2				문학동 346-17	302.2	
		문학동 346-18	197.7				문학동 346-18	197.7	
		문학동 346-19	244.8				문학동 346-19	244.8	
		문학동 346-22	258.0				문학동 346-22	258.0	
		문학동 346-21	185.5				문학동 346-21	185.5	
		문학동 346-20	227.9				문학동 346-20	227.9	

[정정]

(1) 단독주택 용지(D)

가구 번호	면적(m ²)	기정		비고	가구 번호	면적(m ²)	변경		비고		
		필지					필지				
		위치	면적(m ²)				위치	면적(m ²)			
52	4,506.9	문학동 373-4	147.3		52	4,506.9	문학동 373-4	147.3			
		문학동 373-3	286.0				문학동 373-3	286.0			
		문학동 373-25	264.9				문학동 373-25	264.9			
		문학동 373-1	183.8				문학동 373-1	183.8			
		문학동 373-2	139.3				문학동 373-2	139.3			
		문학동 373-6	157.2				문학동 373-6	157.2			
		문학동 373-7	218.9				문학동 373-7	218.9			
		문학동 373-8	165.7				문학동 373-8	165.7			
		문학동 373-10	405.8				2필지로 분할가능	문학동 373-10		405.8	-
		문학동 373-11	283.3					문학동 373-11		283.3	
		문학동 373-12	38.5				문학동 373-14 와 공동개발 (지정)	문학동 373-12		38.5	공동개발 (지정)
		문학동 373-14	230.6				문학동 373-12 와 공동개발 (지정)	문학동 373-14		230.6	
		문학동 373-26	7.6				공동개발 (지정)	문학동 373-26		7.6	공동개발 (지정)
		문학동 373-13	115.7					문학동 373-13		115.7	
		문학동 373-27	144.2					문학동 373-27		144.2	
		문학동 373-20	154.7					문학동 373-20		154.7	
		문학동 373-29	11.4				도로	문학동 373-29		11.4	도로
		문학동 373-15	505.0					문학동 373-15		505.0	
		문학동 373-9	314.9					문학동 373-9		314.9	
		문학동 373-21	201.9					문학동 373-21		201.9	
문학동 373-23	197.2		문학동 373-23	197.2							
문학동 373-18	161.5		문학동 373-18	161.5							
문학동 373-24	171.5		문학동 373-24	171.5							

(3) 준주거 용지(B)

기정				변경					
가구 번호	면적(m ²)	필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m ²)	필 지		비고
		위치	면적(m ²)				위치	면적(m ²)	
19-1	3,461.5	문학동 346-10	257.2		19-1	3,461.5	문학동 346-10	257.2	
		문학동 346-9	167.6				문학동 346-9	167.6	
		문학동 346-11	344.4				문학동 346-11	344.4	
		문학동 346-12	314.8				문학동 346-12	314.8	
		문학동 346-15	344.8				문학동 346-15	344.8	
		문학동 346-14	314.4				문학동 346-14	314.4	
		문학동 346-16	302.2				문학동 346-16	302.2	
		문학동 346-17	302.2				문학동 346-17	302.2	
		문학동 346-18	197.7				문학동 346-18	197.7	
		문학동 346-19	244.8				문학동 346-19	244.8	
		문학동 346-22	258.0				문학동 346-22	258.0	
		문학동 346-21	185.5				문학동 346-21	185.5	
문학동 346-20	227.9		문학동 346-20	227.9					

※정정사유: 가구면적 및 필지의 중복 표기 삭제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당초]

○ 기정

도면번호	위 치(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17, 18, 20(1, 2, 3, 4-1, 4-2, 5-1, 5-2, 6-1, 7), 49, 50, 52, 60, 61, 62, 63, 64, 65, 66, 67, 73(7-1, 7-2, 7-3, 7-4, 8, 9, 10, 11, 12), 74, 75, 76	17, 18, 20(1, 2, 3, 4-1, 4-2, 5-1, 5-2, 6-1, 7), 49, 50, 52, 60, 61, 62, 63, 64, 65, 66, 67, 73(7-1, 7-2, 7-3, 7-4, 8, 9, 10, 11, 12), 74, 75, 76 (단독주택용지 D용도)	용도	지정용도	-
		권장용도	• 별표1의 D 권장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D 불허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형 태	• 별표2의 D	
		배 치	• 별표3의 D	
		색 채	• 별표4의 D	
		건축선	-	

○ 변경

도면번호	위 치(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	17, 18, 20, 49, 50, 52, 60, 61, 62, 63, 64, 65, 66, 67, 73, 74, 75, 76	지정용도	-	
		권장용도	• 단독주택	
		용도 불허용도	불허용도	• 근린생활시설 (단, 1층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하여 허용하며, 2층 이상은 기 허가된 건축물의 용도변경만 허용)
				• 판매 및 영업시설 • 전시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형 태	• 별표2의 D	
		배 치	• 별표3의 D	
색 채	• 별표4의 D			
건축선	-			

[정정]

○ 기정

도면번호	위 치(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17, 18, 20(1, 2, 3, 4-1, 4-2, 5-1, 5-2, 6-1, 7), 49, 50, 52, 60, 61, 62, 63, 64, 65, 66, 67, 73(7-1, 7-2, 7-3, 7-4, 8, 9, 10, 11, 12), 74, 75, 76	17, 18, 20(1, 2, 3, 4-1, 4-2, 5-1, 5-2, 6-1, 7), 49, 50, 52, 60, 61, 62, 63, 64, 65, 66, 67, 73(7-1, 7-2, 7-3, 7-4, 8, 9, 10, 11, 12), 74, 75, 76 (단독주택용지 D용도)	용도	지정용도	-	
			권장용도	• 별표1의 D 권장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D 불허용도	
		-	-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형 태	• 별표2의 D
				배 치	• 별표3의 D
				색 채	• 별표4의 D
				건축선	-

○ 변경

도면번호	위 치(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	17, 18, 20, 49, 50, 52, 60, 61, 62, 63, 64, 65, 66, 67, 73, 74, 75, 76	지정용도	-	
		권장용도	• 단독주택	
		용도 불허용도	불허용도	• 근린생활시설 (단, 1층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하여 허용하며, 2층 이상은 기 허가된 건축물의 용도변경만 허용)
				• 판매 및 영업시설 • 전시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형 태	• 별표2의 D	
		배 치	• 별표3의 D	
색 채	• 별표4의 D			
건축선	-			

※ 정정사유: 인고 제2006-144호(2006. 8. 21.)로 층수 변경(3층 이하 → 4층 이하)된 반영에 따른 오기 정정.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25호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시행중인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5조, 제40조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 1. 28.

인천광역시장

I.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 없음)

○ 명칭: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70-3번지 일원

○ 면적: 567,567㎡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 없음)

-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통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 기여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없음)

- 시행자: 한들구역 도시개발조합
-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1로 55, 3층(백석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 없음)

- 시행기간: 실시계획인가일 ~ 2021.12.31.(환지처분일)
- 시행방법: 환지방식

6. 주요변경 내용

부문별 계획 변경

- 인구수용계획, 주택계획 중 단서조항 삭제

[기 정]

구 분	블록	면적 (㎡)	규모	세대수	인구(인)	구성비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주택 용지	합계	-	222,868	-	4,871	12,274	100.0	-	-	-
	공동 주택 용지	소 계	210,985	-	4,805	12,108	98.6	15.0	240.0	40층 이하
		BL 1	계	-	2,379	5,995	48.8			
			85㎡이하	2,159	5,434	44.3				
		85㎡초과	220	561	4.5					
		계	-	2,426	6,113	49.8				
		BL 2	85㎡이하	2,044	5,135	41.8				
	85㎡초과		382	978	8.0					
	단독 주택 용지	소 계	11,883	-	66	166	1.4	60.0	200.0	3층 이하
		BL 3	11,883	-	66	166	1.4			
세대당 인구	2.52인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상 2020년도 가구당 인구)									
인구밀도	총밀도:215인/ha, 순밀도:551인/ha									

주1) 3층 높이 이하의 부대·복리시설 및 시설물은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함.

[변경]

구분	블록	면적 (㎡)	규모	세대수	인구(인)	구성비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주택 용지	합계	-	222,868	-	4,871	12,274	100.0	-	-	-				
	공동 주택 용지	소계	210,985	-	4,805	12,108	98.6	15.0	240.0	40층 이하				
		계	-	2,379	5,995	48.8								
		BL 1	103,068	85㎡이하	2,159	5,434	44.3							
				85㎡초과	220	561	4.5							
		BL 2	107,917	85㎡이하	2,044	5,135	41.8							
				85㎡초과	382	978	8.0							
		단독 주택 용지	소계	11,883	-	66	166				1.4	60.0	200.0	3층 이하
			BL 3	11,883	-	66	166				1.4			
	세대당 인구	2.52인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상 2020년도 가구당 인구)												
인구밀도	총밀도:215인/ha, 순밀도:551인/ha													

7. 그 밖의 개발계획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II. 실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 명칭: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변경 없음)

-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통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 기여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70-3번지 일원
- 면적: 567,567㎡

4. 시행자 (변경 없음)

- 시행자: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
-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1로 55, 3층(백석동)

5. 시행기간 (변경 없음)

- 실시계획인가일 ~ 2021.12.31.(환지처분일)

6. 시행방식 (변경 없음)

- 환지방식

7. 주요변경 내용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변경)
- 따로 붙임

8. 그 밖의 실시계획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변경)
- 따로 붙임

9.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Ⅲ.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계획과, ☎032-440-4692)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4784)
- 열람내용: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붙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 내용 (변경)

1. 도시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한들 도시개발구역 (한들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시 서구 백석동 170-3번지	567,567	-	567,567	2015. 1. 26.	-

2.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총계		567,567	-	567,567	100.0	
주거 지역	소계	378,158	-	378,158	66.6	
	제1종일반주거지역	23,598	-	23,598	4.2	
	제2종일반주거지역	72,770	-	72,770	12.8	
	제3종일반주거지역	241,683	-	241,683	42.6	
	준주거지역	40,107	-	40,107	7.1	
상업 지역	소계	49,194	-	49,194	8.7	
	근린상업지역	49,194	-	49,194	8.7	
녹지 지역	소계	140,215	-	140,215	24.7	
	자연녹지지역	140,215	-	140,215	24.7	

3.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관한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가. 교통시설

1) 도로

① 도로 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합 계	36	5,597	84,454	12	2,312	35,928	9	2,073	36,829	15	1,212	11,697
대 로	3	1,724	24,552	1	523	1,334	2	1,201	23,218	-	-	-
중 로	15	2,827	51,519	4	1,242	29,590	6	831	13,193	5	754	8,736
소 로	18	1,046	8,383	7	547	5,004	1	41	418	10	458	2,961

②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가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9	35~41	주간선 도로	7,300 (593)	가정동I.C	백석동 구역계	일반도로	-	1998.11	
기정	대로	2	59	30~33	주간선 도로	3,530 (211)	북측시계	대로1-22	일반도로	-	1999.12	폭원 확대
기정	대로	2	117	30 (30~45)	국지 도로	1,038 (990)	대로1-19	대로2-59	일반도로	-	1998.12	
기정	중로	1	669	23.5 ~29.5	국지 도로	935	대로1-19	대로2-117	일반도로	-	2017.8.21	
기정	중로	1	670	22	국지 도로	103	중로1-669	소로3-403	일반도로	-	2017.8.21	
기정	중로	1	671	22	국지 도로	86	중로1-669	백석동 100-1	일반도로	-	2017.8.21	
기정	중로	1	672	22	국지 도로	89	대로2-59	백석동 162-5	일반도로	-	2017.8.21	
기정	중로	2	911	15	국지 도로	284	중로2-912	중로2-912	일반도로	-	2017.8.21	
기정	중로	2	912	15	국지 도로	68	중로1-913	백석동 80-18	일반도로	-	2017.8.21	
기정	중로	2	913	16	국지 도로	29	중로1-669	중로2-912	일반도로	-	2017.8.21	
기정	중로	2	914	15	국지 도로	283	중로2-912	중로2-912	일반도로	-	2017.8.21	
기정	중로	2	915	15	국지 도로	103	중로1-669	소로3-405	일반도로	-	2017.8.21	
기정	중로	2	916	15	국지 도로	64	중로1-669	백석동 산40-1	일반도로	-	2017.8.21	
기정	중로	3	71	12	국지 도로	132	대로1-19	중로1-A	일반도로	-	2017.8.21	연장 축소
기정	중로	3	671	12	국지 도로	270	중로1-670	중로1-670	일반도로	-	2017.8.21	

구분	규 모				가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672	12	국지 도로	15	중로1-671	백석동 산55	일반도로	-	2017.8.21	
기정	중로	3	673	12	국지 도로	297	중로2-915	중로2-915	일반도로	-	2017.8.21	
기정	소로	1	303	10	국지 도로	178	대로2-117	대로2-117	일반도로	-	2017.8.21	
기정	소로	1	304	10	특수 도로	114	대로1-19	소로1-305	보행자도로	-	2017.8.21	
기정	소로	1	305	11	국지 도로	82	소로3-71	소로1-304	일반도로	-	2017.8.21	
기정	소로	1	306	10	국지 도로	71	소로3-71	소로3-401	일반도로	-	2017.8.21	
기정	소로	1	307	10	국지 도로	41	중로1-669	소로3-411	보행자도로	-	2017.8.21	
기정	소로	1	308	11.5	국지 도로	25	대로2-117	백석동 113-19	일반도로	-	2017.8.21	
기정	소로	2	61	9	국지 도로	41	중로1-669	중로2-914	일반도로	-	2017.8.21	
기정	소로	3	28	6	국지 도로	72	대로2-61	소로2-61	일반도로	-	2017.8.21	연장 축소 (구역외)
기정	소로	3	402	6	특수 도로	24	대로2-117	중로3-671	보행자도로	-	2017.8.21	
기정	소로	3	403	6	특수 도로	24	대로1-19	중로1-670	보행자도로	-	2017.8.21	
기정	소로	3	404	6	특수 도로	86	중로1-669	백석동 산45-1	보행자도로	-	2017.8.21	
기정	소로	3	405	6	특수 도로	35	대로1-19	중로2-915	보행자도로	-	2017.8.21	
기정	소로	3	406	6	특수 도로	28	중로3-673	중로1-669	보행자도로	-	2017.8.21	
기정	소로	3	407	6	특수 도로	30	중로1-669	중로2-911	보행자도로	-	2017.8.21	
기정	소로	3	408	6	특수 도로	44	대로1-19	중로2-911	보행자도로	-	2017.8.21	
기정	소로	3	409	4	국지 도로	81	중로1-669	백석동 산40-1	일반도로	-	2017.8.21	
기정	소로	3	410	6	특수 도로	30	대로2-61	중로2-914	보행자도로	-	2017.8.21	
기정	소로	3	411	6	특수 도로	66	소로1-307	백석동 95-4	보행자도로	-	2017.8.21	
기정	소로	3	412	6	특수 도로	20	중로3-673	백석동 산26-1	보행자도로	-	2017.8.21	

주) ()는 구역 내 연장임.

2) 주차장

①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4,819	-	4,819		
기정	①	노외주차장	백석동 80-24 일원	3,313	-	3,313	2017.8.21	
기정	②	노외주차장	백석동 57-3 일원	1,506	-	1,506	2017.8.21	

나. 공간시설

1) 광장

① 광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①	광장	근린광장	백석동 80-78 일원	828	-	828	2017.8.21	

2) 공원

①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변경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93,098	-	93,098		
기정	①	제1호	근린공원	백석동 161 일원	11,761	-	11,761	2017.8.21	
기정	②	제2호	근린공원	백석동 산59-6 일원	24,184	-	24,184	2017.8.21	
기정	③	제3호	근린공원	백석동 산31-1 일원	25,477	-	25,477	2017.8.21	
기정	④	제4호	근린공원	백석동 산26-1 일원	31,676	-	31,676	2017.8.21	

3) 녹지

①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변경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17개소			50,998	-	50,998		
기정	①	녹지	완충녹지	백석동 153-9 일원	2,845	-	2,845	2017.8.21	
기정	②	녹지	완충녹지	백석동 144-3 일원	2,557	-	2,557	2017.8.21	
기정	③	녹지	완충녹지	백석동 139-1 일원	2,623	-	2,623	2017.8.21	
기정	④	녹지	완충녹지	백석동 111-4 일원	3,102	-	3,102	2017.8.21	
기정	⑤	녹지	완충녹지	백석동 산55 일원	539	-	539	2017.8.21	
기정	⑥	녹지	완충녹지	백석동 산47 일원	537	-	537	2017.8.21	
기정	⑦	녹지	완충녹지	백석동 57-13 일원	2,058	-	2,058	2017.8.21	
기정	⑧	녹지	완충녹지	백석동 57-8 일원	805	-	805	2017.8.21	
기정	⑨	녹지	완충녹지	백석동 산22-2 일원	591	-	591	2017.8.21	
기정	⑩	녹지	완충녹지	백석동 산70-5 일원	1,854	-	1,854	2017.8.21	
기정	⑪	녹지	완충녹지	백석동 91-1 일원	654	-	654	2017.8.21	
기정	⑫	녹지	완충녹지	백석동 89-1 일원	1,352	-	1,352	2017.8.21	
기정	①	녹지	경관녹지	백석동 산71-5 일원	17,766	-	17,766	2017.8.21	
기정	②	녹지	경관녹지	백석동 산44-15 일원	8,394	-	8,394	2017.8.21	
기정	③	녹지	경관녹지	백석동 113-20 일원	512	-	512	2017.8.21	
기정	④	녹지	경관녹지	백석동 102-23 일원	2,131	-	2,131	2017.8.21	
기정	①	녹지	연결녹지	백석동 137-8 일원	2,678	-	2,678	2017.8.21	

4) 공공공지

①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1,632	-	1,632		
기정	①	공공공지	백석동 141-17 일원	1,228	-	1,228	2017.8.21	
기정	②	공공공지	백석동 102-13 일원	404	-	404	2017.8.21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

①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k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	전기 공급설비	서구 가정동 산29-2	김포군 양곡리 350-9	인천 서구, 경기도 김포군 일원	15.974	10,832.3 (철탑58기) (CH 2기)	89.4.12.	

② 참고자료 - 케이블헤드(CH) 면적 내역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①	백석동 102-25 일원	· 면적 : 341㎡	-
②	백석동 산40-5 일원	· 면적 : 1,455㎡	구역 외

2) 가스공급설비

① 가스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①	가스 공급설비	백석동 101-4번지 일원	27	-	27	2017.8.21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① 학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	45,297	-	45,297		
기정	447	학교	중학교	백석동 65-3 일원	11,700	-	11,700	1995.4.21	
기정	446	학교	고등학교	백석동 67 일원	13,600	-	13,600	1995.4.21	
기정	511	학교	고등학교	백석동 산40-3 일원	6,997	-	6,997	1986.1.22	
기정	①	학교	초등학교	백석동 산47 일원	13,000	-	13,000	2017.8.21	

2) 문화시설

① 문화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변경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①	문화 시설	-	백석동 산47 일원	2,012	-	2,012	2017.8.21	

3) 사회복지시설

①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변경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①	사회복지시설	-	백석동 산55 일원	1,969	-	1,969	2017.8.21	

마. 방재시설

1) 우수지

① 우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변경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2개소			10,810	-	10,810		
기정	①	우수지	저류지	백석동 140-3 일원	5,785	-	5,785	2017.8.21	-
기정	②	우수지	저류지	백석동 161 일원	5,025	-	5,025	2017.8.21	공원 중복결정

바.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① 하수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변경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①	하수도	백석동 51-127 일원	869	-	869	2017.8.21	

4. 가구 및 획지구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BL1	BL1	170,283	-1	103,068	공동주택용지
			-2	2,477	주유소(존치)
			-3	1,038	준주거시설용지
			-4	1,040	준주거시설용지
			-5	17,766	경관녹지
			-6	24,184	근린공원
			-7	2,678	연결녹지
			-8	2,557	완충녹지
			-9	2,845	완충녹지
			-10	11,761	근린공원 (저류지 중복)
			-11	869	오수중계펌프장
BL2	BL2	142,356	-1	107,917	공동주택용지
			-2	8,393	경관녹지
			-3	1,323	종교시설용지
			-4	397	보행자도로
			-5	13,000	학교
			-6	517	보행자도로
			-7	2,012	문화시설
			-8	1,969	사회복지시설
			-9	539	완충녹지
			-10	537	완충녹지
			-11	27	가스공급설비
			-12	3,102	완충녹지
			-13	2,623	완충녹지
BL3	BL3	32,474	-1	23,355	근린공원
			-2	2,122	근린공원
			-3	6,997	학교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BL4	BL4	20,035	-1	764	상업시설용지
			-2	640	상업시설용지
			-3	1,363	상업시설용지
			-4	640	상업시설용지
			-5	640	상업시설용지
			-6	601	상업시설용지
			-7	182	보행자도로
			-8	3,313	주차장
			-9	632	상업시설용지
			-10	810	상업시설용지
			-11	1,226	상업시설용지
			-12	828	광장
			-13	267	보행자도로
			-14	1,248	상업시설용지
			-15	1,054	상업시설용지
			-16	698	상업시설용지
			-17	1,713	주유소(존치)
			-18	181	보행자도로
			-19	640	상업시설용지
			-20	640	상업시설용지
			-21	640	상업시설용지
			-22	640	상업시설용지
			-23	675	상업시설용지
BL5	BL5	4,594	-1	800	상업시설용지
			-2	500	상업시설용지
			-3	500	상업시설용지
			-4	811	상업시설용지
			-5	761	상업시설용지
			-6	684	상업시설용지
			-7	538	상업시설용지
BL6	BL6	4,309	-1	524	상업시설용지
			-2	500	상업시설용지
			-3	500	상업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BL6	BL6	4,309	-4	772	상업시설용지
			-5	508	상업시설용지
			-6	595	상업시설용지
			-7	910	상업시설용지
BL7	BL7	2,698	-1	934	상업시설용지
			-2	949	상업시설용지
			-3	815	상업시설용지
BL8	BL8	43,165	-1	31,676	근린공원
			-2	1,649	주유소(존치)
			-3	210	보행자도로
			-4	357	단독주택용지
			-5	357	단독주택용지
			-6	357	단독주택용지
			-7	357	단독주택용지
			-8	357	단독주택용지
			-9	357	단독주택용지
			-10	358	단독주택용지
			-11	360	단독주택용지
			-12	506	단독주택용지
			-13	464	단독주택용지
			-14	118	보행자도로
			-15	464	단독주택용지
			-16	506	단독주택용지
			-17	370	단독주택용지
			-18	379	단독주택용지
			-19	379	단독주택용지
			-20	379	단독주택용지
			-21	168	보행자도로
			-22	342	단독주택용지
			-23	343	단독주택용지
			-24	346	단독주택용지
			-25	654	완충녹지
			-26	1,352	완충녹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BL9	BL9	4,545	-1	327	단독주택용지
			-2	324	단독주택용지
			-3	324	단독주택용지
			-4	324	단독주택용지
			-5	324	단독주택용지
			-6	323	단독주택용지
			-7	326	단독주택용지
			-8	327	단독주택용지
			-9	323	단독주택용지
			-10	324	단독주택용지
			-11	324	단독주택용지
			-12	324	단독주택용지
			-13	324	단독주택용지
			-14	327	단독주택용지
BL10	BL10	16,362	-1	13,600	학교
			-2	1,854	완충녹지
			-3	317	보행자도로
			-4	591	완충녹지
BL11	BL11	15,589	-1	11,700	학교
			-2	338	근린생활시설용지
			-3	338	근린생활시설용지
			-4	805	완충녹지
			-5	350	보행자도로
			-6	2,058	완충녹지
BL12	BL12	8,768	-1	149	보행자도로
			-2	604	준주거시설용지
			-3	601	준주거시설용지
			-4	500	준주거시설용지
			-5	500	준주거시설용지
			-6	500	준주거시설용지
			-7	698	준주거시설용지
			-8	140	보행자도로
			-9	575	준주거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BL12	BL12	8,768	-10	550	준주거시설용지
			-11	550	준주거시설용지
			-12	791	준주거시설용지
			-13	400	준주거시설용지
			-14	400	준주거시설용지
			-15	400	준주거시설용지
			-16	400	준주거시설용지
			-17	400	준주거시설용지
			-18	610	준주거시설용지
BL13	BL13	5,014	-1	1,506	주차장
			-2	400	준주거시설용지
			-3	400	준주거시설용지
			-4	450	준주거시설용지
			-5	504	준주거시설용지
			-6	504	준주거시설용지
			-7	450	준주거시설용지
			-8	400	준주거시설용지
			-9	400	준주거시설용지
BL14	BL14	3,337	-1	800	준주거시설용지
			-2	800	준주거시설용지
			-3	800	준주거시설용지
			-4	937	준주거시설용지
BL15	BL15	2,876	-1	2,131	경관녹지
			-2	341	전력시설
			-3	404	공공공지
BL16	BL16	9,703	-1	1,175	준주거시설용지
			-2	1,003	준주거시설용지
			-3	512	경관녹지
			-4	1,228	공공공지
			-5	5,785	저류지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BL8 -4~ BL8 -13 BL8 -15~ BL8 -20 BL8 -22~ BL8 -24 BL9 -1~ BL9 -14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호 단독주택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단, 지상 1층에 한함.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단, 옥외설치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하며 지상 1층에 한함 • 제11호 노유자 시설 - 단,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7조의 규정 적용
		외관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도록 유도하고 서로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유도 • 담장의 설치는 불허를 권장하고, 필요시 담장의 높이를 1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설치 권장
		색채	• [별첨]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4절 건축물 및 색채 참조

나.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BL11 -2~ BL11 -3	용도	허용	<p>▣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용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11호 노유자 시설 - 단,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제외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7조의 규정 적용	
		외관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전체가 통일성있는 디자인을 유도하고 서로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유도 • 건축물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열손실 방지 등을 고려한 투시형 벽면으로 설치 권장 • 담장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어 보행 등의 안전상 필요한 경우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조화되도록 설치하며 과도한 설치는 금지 • 1층 개구부의 높이와 1층 층고는 가급적 주변 건축물과 일치를 유도하여 시각적 연속성 및 조화성 유도 • 옥외광고물은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거 설치 	
색채	• [별첨]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4절 건축물 및 색채 참조			

다. 준주거시설용지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BL1 -3~ BL1 -4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교육연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에 한함) /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및 관람장 제외) / -노유자시설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용도 	
	BL12 -2~ BL12 -7	건폐율	• 60% 이하		
	BL12 -9~	용적률	• 500% 이하		
	BL12 -18	높이	-		
	BL13 -2~ BL13 -9	배치 및 건축선	• 가구 및 획지 경계선(대로1-19호선, 대로2-117호선, 중로1-669호선)으로부터 2m 이격하며, 그 외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7조의 규정 적용		
	BL14 -1~ BL14 -4	외관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전체가 통일성있는 디자인을 유도하고 서로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유도 • 건축물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열손실 방지 등을 고려한 투시형 벽면으로 설치 권장 		
	BL16 -1~ BL16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어 보행 등의 안전상 필요한 경우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조화되도록 설치하며 과도한 설치 금지 • 1층 개구부의 높이와 1층 층고는 가급적 주변 건축물과 일치 유도하여 시각적 연속성 및 조화성 유도 • 옥외광고물은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거 설치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첨]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4절 건축물 및 색채 참조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BL12 -9~ BL12 -18 BL13 -2~ BL13 -9 BL14 -1~ BL14 -4 BL16 -1~ BL16 -2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높이	-
		배치 및 건축선	• 가구 및 획지 경계선(대로1-19호선, 대로2-117호선, 중로1-669호선)으로부터 2m 이격하며, 그 외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7조의 규정 적용
		외관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전체가 통일성있는 디자인을 유도하고 서로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유도 • 건축물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열손실 방지 등을 고려한 투시형 벽면으로 설치 권장 • 담장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어 보행 등의 안전상 필요한 경우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조화되도록 설치하며 과도한 설치 금지 • 1층 개구부의 높이와 1층 층고는 가급적 주변 건축물과 일치를 유도하여 시각적 연속성 및 조화성 유도 • 옥외광고물은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거 설치
	색채	• [별첨]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4절 건축물 및 색채 참조	

라. 공동주택용지 (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BL1 -1 BL2 -1	용도	허용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상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용도
		건폐율	• 15% 이하(단, 3층 높이 이하의 부대·복리시설 및 시설물은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
		용적률	• 240% 이하
		높이	• 40층 이하
		배치	• 개방감과 조망감 확보, 공공오픈스페이스 조성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남북 방향 통경축 확보 • 부대복리시설 배치 가능
		건축선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7조의 규정 적용 - 단, 부대복리시설은 제외함.
		외관 및 형태	• 지붕형태는 조형미를 강조한 평지붕을 권장 • 입면은 복잡한 패턴은 지양하고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가 구분되도록 조형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를 통하여 경관적으로 특색 있고 독창적인 형태를 권장
색채	• 주위와 조화됨으로써 연속성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지역의 이미지와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색채로 유도 • [별첨]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4절 도시색채 및 재료 참조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BL1 -1 BL2 -1	용도	허용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용도
		건폐율 (변경)	• 15% 이하	
		용적률	• 240% 이하	
		높이	• 40층 이하	
		배치 (변경)	• 개방감과 조망감 확보, 공공오픈스페이스 조성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각 획지별 동·서 방향 및 남·북 방향 1개소 이상, 폭원 10~15m의 통경축 확보	
		건축선 (변경)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7조의 규정 적용 - 단, 부대복리시설은 제외함. • 한들로변 공동주택용지 경계로부터 40m 건축한계선 지정 - 단, 부대복리시설은 배치 가능	
		외관 및 형태	• 지붕형태는 조형미를 강조한 평지붕을 권장 • 입면은 복잡한 패턴은 지양하고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가 구분되도록 조형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를 통하여 경관적으로 특색 있고 독창적인 형태를 권장	
		색채	• 주위와 조화됨으로써 연속성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지역의 이미지와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색채로 유도 • [별첨]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4절 도시색채 및 재료 참조	

마. 상업용지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L4 -1~ BL4 -6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상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14호 업무시설 • 제15호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에 한함) • 제16호 위락시설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0%이하 	
BL4 -9~ BL4-11		높이	-	
BL4 -14~ BL4-16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주 전면은 간선도로변에 위치 • 대지내 공지를 설치할 경우 가로변으로 유도하여 공공성 확보 	
BL4 -19~ BL4-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 가구 및 획지경계선으로부터 대로1-19호선, 대로2-61호선 변은 5m 이격하며, 중로1-669호선변은 3m 이격 	
BL5 -1~ BL5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면한계선 - 가구 및 획지경계선으로부터 대로1-19호선, 대로2-61호선 변은 2층 이상은 2m 지정 	
BL6 -1~ BL6 -7	외관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전체가 통일성있는 디자인을 유도하고 서로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유도 	
BL7 -1~ BL7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열손실 방지 등을 고려한 투시형 벽면으로 설치 권장 • 담장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어 보행 등의 안전상 필요한 경우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조화되도록 설치하며 과도한 설치는 금지 • 1층 개구부의 높이와 1층 층고는 가급적 주변 건축물과 일치를 유도하여 시각적 연속성 및 조화성 유도 • 옥외광고물은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거 설치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고, 주변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별첨]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4절 건축물 및 색채 참조 	

바. 학교용지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BL2 -5 BL3 -3	용도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용도 • 학1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초등학교에 부속된 유치원 가능) • 학2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고등학교 • 학3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속용도
	BL10 -1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BL1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층 이하 		

사. 문화시설용지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H2 -7	용도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7조의 규정 적용 		

아. 사회복지시설용지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H2-8	용도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 제11호 노유자시설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7조의 규정 적용			

자. 종교시설용지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H2-3	용도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호 종교시설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7조의 규정 적용			

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용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H1-2	용도	지정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다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 할 수 있으며, 그 연면적은 40%를 초과할 수 없음)
			불허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	-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7조의 규정 적용		
-	H4-17	용도	지정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다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 할 수 있으며, 그 연면적은 40%를 초과할 수 없음)
			불허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700% 이하	
		높이	-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7조의 규정 적용		

카.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없음)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	•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표시된 구간에서의 차량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건축 심의(교통분야 포함) 또는 교통관련 심의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차량동선
-	-	• 주차장관련 규제 사항은 건축 심의(교통분야 포함) 또는 교통관련 심의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주차장
-	-	• 건축한계선의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로변의 공지공간은 일반 대중의 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가구 또는 획지별로 항시 개방될 수 있는 구조 및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함.	전면공지
-	-	• 지구단위계획 완화적용에 관한 사항 - 향후 관련법령 및 지침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제정개정 또는 변경된 법령 및 지침을 적용함	지구단위계획 완화적용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1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6-211호(2016.10.18.)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고시된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779번지(영종국제도시 A27BL)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 1. 21.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영종국제도시 A27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변경 없음)

2. 사업주체의 성명 · 주소 (변경)

가. 당초: 인천도시공사 외2 [(주)대우건설, 지에스건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만수동)]

나. 변경: 인천도시공사 (대표이사 박인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만수동)]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변경 없음)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779 (영종 A27블록)

나. 대지면적: 90,174.2㎡

다. 연 면 적: 219,847.9841㎡

라. 건설주택의 규모

- 공동주택 : 지하1층 지상 25층 / 19개동 / 1,604세대

· 64A형 450세대, 64B형 92세대, 64C형 134세대

· 74A형 126세대, 74B형 50세대

· 84A형 278세대, 84B형 262세대, 84C형 114세대, 84D형 98세대

- 부대복리시설 :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등 11개동

4. 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가. 사업시행기간: 2016. 11. ~ 2019. 2.

5.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 허가 등의 의제 사항 (변경 없음)

- 「주택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2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공고

- 1) 업 체 명 : 맑은환경산업(주)
- 2) 대 표 자 : 이규봉
-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51-12
-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109호
- 6) 등록연월일 : 2018. 1. 31.
- 6)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 7) 취 소 일 자 : 2019. 1. 2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29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 1. 21.

인천광역시장

변경등록 사항 : 대표자 및 소재지

○ 단체명 : 인천나눔실천봉사회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단체명	변경 사항			변경 사유	주관과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018-0-인천 광역시-26호 (2018. 9. 3.)	인천나눔	대표자	오 현 순	김 성 결	임원선출 및 사무소 소재지 변경	노인정책과
	실천봉사회	소재지	미추홀구 경인로 392, 75호(주안동)	미추홀구 경인로 140, 3층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38호

인천도시계획시설(유수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유수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열람공고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재난예방과(☎032-440-3362), 남동구 도시관리과(☎032-453-298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 28.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4-3, 66-98, 66-103번지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유수지	저류시설	논현동 664-3	2,275.5	인고 제2018-289호 (2018.11.26.)	
신설	유수지	저류시설	논현동 66-98, 66-103	1,639.0	인고 제2012-324호 (2012.11.24.)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도시계획시설(유수지)

【명칭】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 설치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 3,914.5㎡(기존시설(도로)면적 포함)
- 사업규모
 - 저류시설 V= 6,688㎥ [664-3 : 2,790㎥, 66-98외1 : 3,898㎥]
 - 펌프시설 : 222㎥/min×3대(예비 1대 포함)

5.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0. 12. 31.

7. 열람기간 : 2019.01.28. ~ 2019.02.19.(14일)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토 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소 유 자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총 계			3,907.5	3,907.5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4-3	공	2,275.5	2,27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98	잡	680	680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103	잡	952	952		

9. 지장물 조서 :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9-146호

공인 등록 공고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28.

인 천 광 역 시 장

1. 등록사유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신규 등록
2. 최초사용연월일 : 2019. 2. 1.
3. 등록 공인명 및 인영 : 붙임 참고

등록 공인명 및 인영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인
(인천도시역사관전용)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9-154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인천광역시장

등록사업자	대표자	등록 연월일	등록번호	자본금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비고
(주)현민종합 건설	김진기	2019.1.23.	인천190001	500,000천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6번길 7, 2층(부평동)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9-156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인천광역시장

등록사업자	대표자	등록 연월일	등록번호	자본금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비고
(주)동인이앤씨 종합건설	이두영	2019.1.23.	인천190002	500,000천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99, 203호(송의동, 아르떼노블)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57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인천광역시장

등록사업자	대표자	등록 연월일	등록번호	자본금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비고
(주)에스디 파트너스	범병규	2019.1.23.	인천190003	600,000천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42번길 29, 201호(송도동, 에이스프라자 1차)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64호

「인천광역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을 위하여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28.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42호, 2018. 12. 28.) 개정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인천광역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젊은 기술인들의 고용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하여 현행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반을 재검토하고 참여기술인 평가, 용역수행실적 평가, 신용도 평가,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업무 중복도 평가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참여기술인 평가 (별표1)

참여기술인 평가 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건설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한 기술인이 통상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실적·경력을 가진 경우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경력·실적의 요구 한도를 설정

하며, 용역 경력·실적의 교차 인정을 확대하여 다양한 경력을 가진 기술인을 육성하고,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실적 인정은 1인으로 제한하여 현업에서 일하는 기술인들에 대한 우대 강화

나. 용역수행성과 평가 (별표1, 부표1)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 성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점수에 반영하여 좋은 성과를 낸 업체를 우대하고 우수한 엔지니어링 성과를 유도

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하고,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성과 평가 시 “우” 또는 “미”의 점수를 부여

다. 신용도 평가 (별표1)

실제 업무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정상태 건실도 기준이 업체의 기술력 평가 결과를 좌우하여 소규모 업체 불리하므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급간 점수 격차도 축소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별표1)

개발실적 평가시 신기술·특허 등 개발시 부여하는 건당 점수를 높여서 기술개발 및 구입 등에 대한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실적 만점 기준을 낮춰 업계 부담 완화하며, 활용실적은 실제 시공되기 전이라도 해당 기술이 설계에 반영되고 설계가 준공이 된 경우에는 성과로 인정하여 추후 증빙에 대한 부담을 완화

마. 중복도 평가 (제5조제4항, 별표1, 부표1)

과도한 책임기술인 중복도 기준은 완화하고 실무급의 중복도는 평가를 새로 도입하여 실제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여건 조성

중복도 기준이 발주청 자율로 운영됨에 따라 발주청에서 중복도 만점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복도 만점 기준은 200~300%로 제한하고, 중복도 평가 대상 분야도 3~5분야로 제한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인 평가와 실무기술자 평가를 도입하여 실무에서 일하는 기술인들의 과도한 업무중복 수행을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전화: 032-440-3752, 이메일 lth1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 혹은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

나. 의견제출 서식(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42호, 2018. 12. 28.) 개정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인천광역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젊은 기술인들의 고용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하여 현행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반을 재검토하고 참여기술인 평가, 용역수행실적 평가, 신용도 평가,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평가, 업무 중복도 평가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참여기술인 평가 (별표1)

참여기술인 평가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건설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한 기술인이 통상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실적·경력을 가진 경우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경력·실적의 요구 한도를 설정하며, 용역 경력·실적의 교차인정을 확대하여 다양한 경력을 가진 기술인을 육성하고,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실적 인정은 1인으로 제한하여 현업에서 일하는 기술인들에 대한 우대 강화

나. 용역수행성과 평가 (별표1, 부표1)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 성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점수에 반영하여 좋은 성과를 낸 업체를 우대하고 우수한 엔지니어링 성과를 유도

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하고,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성과 평가 시 “우” 또는 “미”의 점수를 부여

다. 신용도 평가 (별표1)

실제 업무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정상태 건실도 기준이 업체의 기술력 평가 결과를 좌우하여 소규모 업체 불리하므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급간 점수 격차도 축소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별표1)

개발실적 평가시 신기술·특허 등 개발시 부여하는 건당 점수를 높여서 기술개발 및 구입 등에 대한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실적 만점 기준을 낮춰 업계 부담 완화하며, 활용실적은 실제 시공되기 전이라도 해당 기술이 설계에 반영되고 설계가 준공이 된 경우에는 성과로 인정하여 추후 증빙에 대한 부담을 완화

마. 중복도 평가 (제5조제4항, 별표1, 부표1)

과도한 책임기술인 중복도 기준은 완화하고 실무급의 중복도는 평가를 새로 도입하여 실제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여건 조성

중복도 기준이 발주청 자율로 운영됨에 따라 발주청에서 중복도 만점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복도 만점 기준은 200~300%로 제한하고, 중복도 평가 대상 분야도 3~5분야로 제한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인 평가와 실무기술인 평가를 도입하여 실무에서 일하는 기술인들의 과도한 업무중복 수행을 방지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 - 000호

인천광역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인천광역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가목 후단에 “(단, 실무기술인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다.)”를 추가한다.

[별표1]을 별표와 같이 한다.

[부표1]을 부표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적용례) [별표1] 2. 용역수행실적 중 “라. 용역수행성과” 평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까지는 적용 여부를 발주청이 선택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경우 [별표1] “2. 용역수행실적” 평가는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종전의 [별표1] “2.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p> <p>① ~ ③ (생략)</p> <p>④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업자 평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이행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업무중복도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른다.</p> <p>가. 발주청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p>나. ~ 다. (생략)</p>	<p>제5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 ----- ----- ----- ----- ----- ----- ----- (단, 실무기술인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다.)</p> <p>나. ~ 다. (현행과 같음)</p>

[별표1]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합 계		100		
1. 참여기술인 [50]	가. 책임기술인 <15>	(1) 등급	3	절대평가
		(2) 경력	4	
		(3) 실적	5	
		(4) 기술능력 및 업무 관리능력	3	상대평가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1) 등급	4	절대평가
		(2) 경력	7	
		(3) 실적	8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1) 등급	4	절대평가
		(2) 경력	5	
		(3) 실적	5	
라.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2>	(1) 교육훈련	1	절대평가	
	(2) 전차용역수행실적	1		
2. 용역수행 실적 [15]	가.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		6	절대평가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금액		6	
	다. 전차용역 수행실적		1	
	라. 용역수행성과		2	상대평가
3. 신용도 [10]	가.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벌점 등		7	절대평가
	나. 재정상태 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가. 개발실적		2	절대평가
	나. 투자실적		10	
	다. 활용실적		3	
5. 업무중복도 [10]	가. 책임기술인		3	절대평가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4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2	
	라. 실무기술인		1	
가점 [1.3]	가. 지역업체 참여비율 40%이상		1	절대평가
	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I.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참여 기술인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기술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경력] 및 [실적] 평가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보유조건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단, 전문 분야와 전문분야 외의 분야는 발주청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 당해 분야의 60% 인정 (단, 토질·지질, 토목구조 등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준에 수행한 사업 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 시 80~100%를 인정한다.) ※ 분야별 참여기술인 : 해당 분야의 100% 인정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 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사업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만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기준은 발주청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 (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만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수행실적 인정기준은 부표를 따르며, 발주청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기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단,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 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참여 기술인		[50]	<p>- 참여건설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p> <p>-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 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p> <p>- 참여건설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이적 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정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536 808 1433 913"> <tr> <td>최근 이적기간</td> <td>6개월 이상</td> <td>6개월 미만 ~ 3개월 이상</td> <td>3개월 미만</td> </tr> <tr> <td>감소계수</td> <td>1.0</td> <td>0.9</td> <td>0.8</td> </tr> </table>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감소계수	1.0	0.9	0.8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감소계수	1.0	0.9	0.8																																														
	가. 책임기술인 (1) 등급 (2) 경력 (3) 실적 (4)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15) 3 4 5 3	<p>- 등급에 따라 평가</p> <table border="1" data-bbox="536 1043 1433 1126"> <tr> <td>등 급</td> <td>특급</td> <td>고급</td> <td>중급</td> <td>초급</td> </tr> <tr> <td>점 수</td> <td>3.0</td> <td>2.25</td> <td>1.5</td> <td>0.75</td> </tr> </table> <p>- 경력에 따라 평가 (단, 최대 요구 기간은 15년이 넘지 않도록 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536 1211 1433 1317"> <tr> <td>경 력</td> <td>15년 이상</td> <td>15년 미만 ~13년 이상</td> <td>13년 미만 ~11년 이상</td> <td>11년 미만 ~9년 이상</td> <td>9년 미만</td> </tr> <tr> <td>점 수</td> <td>4.0</td> <td>3.6</td> <td>3.2</td> <td>2.8</td> <td>2.4</td> </tr> </table> <p>-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단, 최대 요구 건수는 10건이 넘지 않도록 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536 1435 1433 1541"> <tr> <td>실 적</td> <td>10건 이상</td> <td>10건 미만 ~8건 이상</td> <td>8건 미만 ~6건 이상</td> <td>6건 미만 ~4건 이상</td> <td>4건 미만</td> </tr> <tr> <td>점 수</td> <td>5.0</td> <td>4.5</td> <td>4.0</td> <td>3.5</td> <td>3.0</td> </tr> </table> <p>*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참여기간에 따라 실적건수 등을 정하되, 발주청에서 [실적] 인정 범위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p> <p>-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p> <table border="1" data-bbox="536 1794 1433 1877"> <tr> <td>등 급</td> <td>수</td> <td>우</td> <td>미</td> <td>양</td> <td>가</td> </tr> <tr> <td>점 수</td> <td>3.0</td> <td>2.7</td> <td>2.4</td> <td>2.1</td> <td>1.8</td> </tr> </table> <p>* (첨부1)은 예시로 활용 ※ 용역비 5억원 미만 용역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p>	등 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 수	3.0	2.25	1.5	0.75	경 력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점 수	4.0	3.6	3.2	2.8	2.4	실 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점 수	3.0	2.7	2.4	2.1	1.8
등 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 수	3.0	2.25	1.5	0.75																																													
경 력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점 수	4.0	3.6	3.2	2.8	2.4																																												
실 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점 수	3.0	2.7	2.4	2.1	1.8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참여기술인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대한 점수배분율을 정하여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1) 등급	4	- 등급에 따라 평가 (특급기술인과 고급기술인은 동일하게 평가) <table border="1"> <tr> <td>등 급</td> <td>고급 이상</td> <td>중급</td> <td>초급</td> </tr> <tr> <td>점 수</td> <td>4.</td> <td>3.0</td> <td>2.0</td> </tr> </table>	등 급	고급 이상	중급	초급	점 수	4.	3.0	2.0				
	등 급	고급 이상	중급	초급											
	점 수	4.	3.0	2.0											
	(2) 경력	7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단, 최대 요구 기간은 10년이 넘지 않도록 한다) <table border="1"> <tr> <td>경 력</td> <td>10년 이상</td> <td>10년 미만 ~9년 이상</td> <td>9년 미만 ~8년 이상</td> <td>8년 미만 ~7년 이상</td> <td>7년 미만</td> </tr> <tr> <td>점 수</td> <td>7.0</td> <td>6.3</td> <td>5.6</td> <td>4.9</td> <td>4.2</td> </tr> </table>	경 력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점 수	7.0	6.3	5.6	4.9	4.2
	경 력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점 수	7.0	6.3	5.6	4.9	4.2										
(3) 실적	8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단, 최대 요구 건수는 10건이 넘지 않도록 한다) <table border="1"> <tr> <td>실 적</td> <td>10건 이상</td> <td>10건 미만 ~8건 이상</td> <td>8건 미만 ~6건 이상</td> <td>6건 미만 ~4건 이상</td> <td>4건 미만</td> </tr> <tr> <td>점 수</td> <td>8.0</td> <td>7.2</td> <td>6.4</td> <td>5.6</td> <td>4.8</td> </tr> </table> <p>*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에 따라 실적건수 등을 정하되, 발주청에서 [실적]인정 범위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p>	실 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실 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인에 대한 점수배분율을 정하여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1) 등급	4	- 등급에 따라 평가 (중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 <table border="1"> <tr> <td>등 급</td> <td>중급 이상</td> <td>초급</td> </tr> <tr> <td>점 수</td> <td>4</td> <td>3</td> </tr> </table>	등 급	중급 이상	초급	점 수	4	3							
등 급	중급 이상	초급													
점 수	4	3													
(2) 경력	5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단, 최대 요구 기간은 5년이 넘지 않도록 한다) <table border="1"> <tr> <td>경 력</td> <td>5년 이상</td> <td>5년 미만 ~4년 이상</td> <td>4년 미만 ~3년 이상</td> <td>3년 미만 ~2년 이상</td> <td>2년 미만</td> </tr> <tr> <td>점 수</td> <td>5.0</td> <td>4.5</td> <td>4.0</td> <td>3.5</td> <td>3.0</td> </tr> </table>	경 력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경 력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3) 실적	5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단, 최대 요구 건수는 5건이 넘지 않도록 한다) <table border="1"> <tr> <td>실 적</td> <td>5건 이상</td> <td>5건 미만 ~4건 이상</td> <td>4건 미만 ~3건 이상</td> <td>3건 미만 ~2건 이상</td> <td>2건 미만</td> </tr> <tr> <td>점 수</td> <td>5.0</td> <td>4.5</td> <td>4.0</td> <td>3.5</td> <td>3.0</td> </tr> </table> <p>*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에 따라 실적건수 등을 정하되, 발주청에서 [실적]인정 범위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p>	실 적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실 적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참여기술인	라.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2)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4">용역완료 후 경과기간</th> </tr> <tr> <th>1년 미만</th> <th>1년 이상~3년 미만</th> <th>3년 이상</th> <th>미 참여</th> </tr> <tr> <td>책임기술인</td> <td>0.5점</td> <td>0.4점</td> <td>0.3점</td> <td>0</td> </tr> <tr> <td>분야별책임기술인</td> <td>0.5점</td> <td>0.4점</td> <td>0.3점</td> <td>0</td> </tr> </table> * 전차용역의 범위는 당해용역의 직전단계(예, 실시설계의 경우 기본설계)에 한한다. * 전차용역의 최종준공(기성)시 까지 용역기간 전부에 참여한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기성실적의 인정여부 및 기준은 발주청이 정한다)	구 분	용역완료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	미 참여	책임기술인	0.5점	0.4점	0.3점	0	분야별책임기술인	0.5점	0.4점	0.3점	0
	구 분	용역완료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	미 참여																		
책임기술인	0.5점	0.4점	0.3점	0																		
분야별책임기술인	0.5점	0.4점	0.3점	0																		
	(2) 전차용역 수행실적	1																				
2. 용역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15]	※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용역의 인정 범위는 발주청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6)	-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건 수</th> <th>3건 이상</th> <th>3건 미만 ~2건 이상</th> <th>2건 미만 ~1건 이상</th> <th>1건 미만</th> </tr> <tr> <td>점 수</td> <td>6.0</td> <td>5.4</td> <td>4.8</td> <td>4.2</td> </tr> </table>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건 수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점 수	6.0	5.4	4.8	4.2									
건 수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점 수	6.0	5.4	4.8	4.2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용역수행실적	나. 유사용역수행실적금액	(6)	-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 금액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table border="1" data-bbox="544 412 1433 517"> <tr> <td>구 분</td> <td>35억 이상</td> <td>35억 미만 ~25억 이상</td> <td>25억 미만 ~15억 이상</td> <td>15억 미만</td> </tr> <tr> <td>점 수</td> <td>6.0</td> <td>5.4</td> <td>4.8</td> <td>4.2</td> </tr> </table> ※ 실적금액이 적은 분야(예: 조경, 교통, 환경분야 등)는 20%범위내에서 하향조정가능	구 분	35억 이상	35억 미만 ~25억 이상	25억 미만 ~15억 이상	15억 미만	점 수	6.0	5.4	4.8	4.2
	구 분	35억 이상	35억 미만 ~25억 이상	25억 미만 ~15억 이상	15억 미만								
	점 수	6.0	5.4	4.8	4.2								
다. 전차용역수행실적	(1)	※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前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용역업자에 대하여 평가 - 업체의 전차 용역수행정도(용역의 종류,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등)에 따라 평가 <table border="1" data-bbox="544 840 1433 945"> <tr> <td>경과기간</td> <td>1년 미만</td> <td>1년 이상 ~3년 미만</td> <td>3년 이상</td> <td>미 참여</td> </tr> <tr> <td>점 수</td> <td>1.0</td> <td>0.8</td> <td>0.6</td> <td>0.0</td> </tr> </table> * 전차용역의 범위는 당해용역의 직전단계(예, 실시설계의 경우 기본설계)에 한한다. * 전차용역의 최종준공(기성)시 까지 용역기간 전부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기성실적의 인정여부 및 기준은 발주청이 정한다)	경과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미 참여	점 수	1.0	0.8	0.6	0.0	
경과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미 참여									
점 수	1.0	0.8	0.6	0.0									
라. 용역수행성과	(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에 따라 상대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용역평가는 건진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3. 신 용 도	가.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벌점 등	[10] (7)	- 용역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3. 신용도	나. 재정상태 건설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상태 건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2)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회 사 채</td> <td style="width: 15%;">BBB-이상</td> <td style="width: 15%;">BBB-미만 B-이상</td> <td style="width: 15%;">CCC+ 이하</td> <td style="width: 15%;">미제출</td> </tr> <tr> <td>기업어음</td> <td>A3-이상</td> <td>A3-미만 B-이상</td> <td>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신용</td> <td>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점 수</td> <td>3.0</td> <td>2.8</td> <td>2.1</td> <td>0</td> </tr> </table> <p>※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p>	회 사 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3.0	2.8	2.1	0
회 사 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3.0	2.8	2.1	0																			
4.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가. 개발실적	[15]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경과기간</td> <td style="width: 15%;">5년 미만</td> <td style="width: 15%;">5년 이상 10년 미만</td> <td style="width: 15%;">10년 이상 20년 미만</td> </tr> <tr> <td>특 허</td> <td>100%</td> <td>80%</td> <td>60%</td> </tr> <tr> <td>실용신안</td> <td>100%</td> <td>80%</td> <td>-</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나. 투자실적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table border="1" data-bbox="523 533 1428 651"> <thead> <tr> <th>구분</th> <th>1.50% 이상</th> <th>1.50% 미만 1.25% 이상</th> <th>1.25% 미만 1.00% 이상</th> <th>1.00% 미만 0.75% 이상</th> <th>0.75% 미만 0.50%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d>6.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구분	1.50%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구분	1.50%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다. 활용실적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table border="1" data-bbox="528 1787 1428 1977">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5">가중치</th> </tr> <tr> <th>1.0</th> <th>0.9</th> <th>0.8</th> <th>0.7</th> <th>0.6</th> </tr> </thead> <tbody> <tr> <td>활용건수 (건)</td> <td>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 ~3 이상</td> <td>3 미만 ~2 이상</td> <td>2 미만 ~0 초과</td> </tr> <tr> <td>활용금액 (억원)</td> <td>20 이상</td> <td>20 미만 ~18 이상</td> <td>18 미만 ~16 이상</td> <td>16 미만 ~14 이상</td> <td>14 미만 ~0 초과</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0 초과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0 초과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0 초과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0 초과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5. 업무 중복도		[10]	<p>-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 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p> <p>· 각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용역평가결과 등을 분석하여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 폭을 정함 (단, 만점기준은 200~300%으로 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544 555 1425 712"> <thead> <tr> <th>구분</th> <th>만점</th> <th>만점×0.9</th> <th>만점×0.8</th> <th>만점×0.7</th> <th>만점×0.6</th> </tr> </thead> <tbody> <tr> <td>①</td> <td>200% 미만</td> <td>200~250% 미만</td> <td>250~300% 미만</td> <td>300~350% 미만</td> <td>350% 이상</td> </tr> <tr> <td>②</td> <td>250% 미만</td> <td>250~350% 미만</td> <td>350~450% 미만</td> <td>450~550% 미만</td> <td>550% 이상</td> </tr> <tr> <td>③</td> <td>300% 미만</td> <td>300~400% 미만</td> <td>400~500% 미만</td> <td>500~600% 미만</td> <td>600% 이상</td> </tr> </tbody> </table> <p>①)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200% 미만으로 설정하고 차등 폭을 50%로 할 경우 ②)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250% 미만으로 설정하고 차등 폭을 100%로 할 경우 ③)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300% 미만으로 설정하고 차등 폭을 100%로 할 경우</p> <p>-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p> <p>-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p> <p>-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용역(예: 사후관리용역)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p> <p>-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p>	구분	만점	만점×0.9	만점×0.8	만점×0.7	만점×0.6	①	200% 미만	200~250% 미만	250~300% 미만	300~350% 미만	350% 이상	②	250% 미만	250~350% 미만	350~450% 미만	450~550% 미만	550% 이상	③	300% 미만	300~400% 미만	400~500% 미만	500~600% 미만	600% 이상
구분	만점	만점×0.9	만점×0.8	만점×0.7	만점×0.6																						
①	200% 미만	200~250% 미만	250~300% 미만	300~350% 미만	350% 이상																						
②	250% 미만	250~350% 미만	350~450% 미만	450~550% 미만	550% 이상																						
③	300% 미만	300~400% 미만	400~500% 미만	500~600% 미만	600% 이상																						
	가. 책임기술인	(3)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4)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2)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라. 실무기술인	(1)	<p>- 용역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p> <p>-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p>																								

Ⅱ.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가. 지역업체 참여비율	[1.3] (1)	- 지역업체 참여비율 40%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배점이외에 가점 1점 부여
	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p>*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p> <p>*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p> <p>*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p> <p>-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p> <p>-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p>

※ 비고 : 위 [별표1]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1]에 따른다.

[부표1]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I.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4.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II.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과 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상대평가지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6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성과 평가 시 “우” 또는 “미”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
3.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6. 용역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용역에 대하여도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7.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4)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 가.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나.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8.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5)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용역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9.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10. 발주청은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3~5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11.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3.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첨부 1.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양식

용역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당해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3.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0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첨부 4.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I.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역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주국)
3) 발주관성격	정부(), 공공기관(), 민간()	4) 계약주체	본사(), 지사(), 현지법인(), 지분율(%)
5) 신청자 (대표)	5-1) 회사명	5-2) 면허번호	5-3) 대표자
	5-4) 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하도급()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 여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 건설관리(), 타당성조사(), 기타()		
II.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사명			
2) 대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III. 붙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 . . .</p> <p>해외건설협회장 귀하</p> <p style="text-align: right;">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p>			
확인자			
용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역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주처			

첨부 5.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확인서

I.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청인	1-1) 회사명			1-2) 대표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II. 해외설계용역					
1) 공사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주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 ※ 해당란에 ○ 표				
III.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000000-0000000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IV. 붙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 . . .</p> <p>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p> <p style="text-align: right;">주소 : 회사명 : 대표 : (인)</p>					
확인자					
용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인)		
발주처					
공사명					

첨부 6. 설계등 용역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65호

도시계획시설(운동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운동장: 문학종합경기장)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2019. 1. 28.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48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운동장)
- 명칭: 문학종합경기장 용도변경 및 증축

3. 면적 및 규모

- 면적: 432,034.6㎡(문학종합경기장)
- 규모: 주경기장(용도변경), 야구장(증축)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장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5. 사업기간: 2017. 1. ~ 2018. 1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66호

2019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참여업체(민간기업·대학 등) 선정을 위한 공모 공고

2019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56호) 공모지침에 따라 참여업체(민간기업·대학 등) 선정을 위하여 공모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9. 1. 28.

인천광역시장

1. 지원 대상 사업

- 사 업 명: 2019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참여업체(민간기업·대학 등) 선정 공모
- 사업내용: 민간기업·대학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용해 스마트 솔루션·서비스 등을 통해 실제 도시문제 해결
- 지원규모: 1개소 선정(국비 15억 원)

2. 신청자격

- 민간기업 + 대학 등
 - 대기업 참여시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을 파트너사로 참여(단독 참여 불가)

3. 신청방법

- (제출일) 2019년 2월 26일(화) ~ 2월 28일(목) 16:00시 까지
- (제출장소) 인천광역시 원도심스마트정보담당관
 - 담당자: 소용 주무관(☎ 032-440-8922, swhw02@korea.kr)
 - 담당자: 박삼제 주무관(☎ 032-440-8928, psjsj3@korea.kr)
 - * 과명 변경예정: 스마트도시담당관(2019. 2. 1. 조직개편 이후)
- (제출방법) 제출기한 내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IDC센터동 3층 304호

<제출서류>

- ① 공모 신청서(원본) 1부(민간기업 등 대표자 직인 날인)
- ②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계획서(원본) 1부
- ③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계획서(평가용) 10부
 - 평가용은 참여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 ④ 원본 파일(USB 또는 CD 등에 저장)

4.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 선정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9. 2. 28.까지) → 평가 및 선정('19. 3. 5.예정)
- 선정기준 : 공모 지침(별첨) 참고

5. 유의사항

-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 업체의 책임으로 간주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원도심스마트정보담당관(032- 440- 8922, 89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2019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참여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 지침

[별첨]

- 2019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
참여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 지침

살고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2019. 1. .

인천광역시
원도심스마트정보담당관


목 차


1.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개요	1
2. 공모계획	2
3. 공모 평가방법 및 기준	4
4. 향후 추진일정	5
5. 제출서류 및 양식	7

I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개요(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국토교통부에서는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수립('18.1,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도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사업*을 추진 중
 - * (신규) 국가 시범도시, (기존도시) 혁신성장동력 R&D,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통합플랫폼 지자체 보급, (노후)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 스마트시티 사업에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자체·시민의 수요를 반영(Bottom-up)하는 새로운 방식의 정책사업 도입

□ 사업목적 및 추진 방향

- (목적) 민간기업·지자체·대학 등 창의적 아이디어로 실제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민간기업 솔루션의 접목·확산을 추진
 - 기업·대학(아이디어·투자) + 지자체(공간·시민) 중심으로 기획수립을 진행, 우수 기술·솔루션 선정 이후 본 사업 추진(별도 예산반영 추진)
- (방향) 기존 지자체 지원사업과 달리 민간기업의 적극·선도적인 참여와 투자 유도 ☞ '지자체 + 기업 등' 단위로 공모추진 및 선정
 - 사업 계획, 성과 목표, 거버넌스 체계 및 예산 설계 등 다수 부문에 대하여 사업 신청자가 탄력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자율권 보장
 - 챌린지의 성격에 맞게 과정상 경쟁체제 도입(1차 선정·경쟁 → 2차 선정)
 - 혁신적인 新기술·서비스 접목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활용 유도

II

공모계획

□ 사업지원 대상

- (응모자격) 민간기업 + 대학 등
 - 대기업 참여시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을 파트너사로 참여(단독 참여 불가)
 - 대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창업기업
- (지원범위) 교통·에너지·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신규 시장을 창출하는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 사업
 - 스마트시티 확산사업(통합플랫폼 등)과 지자체 자체사업을 통해 既 구축된 스마트 서비스·솔루션 또는 인프라 등과 연계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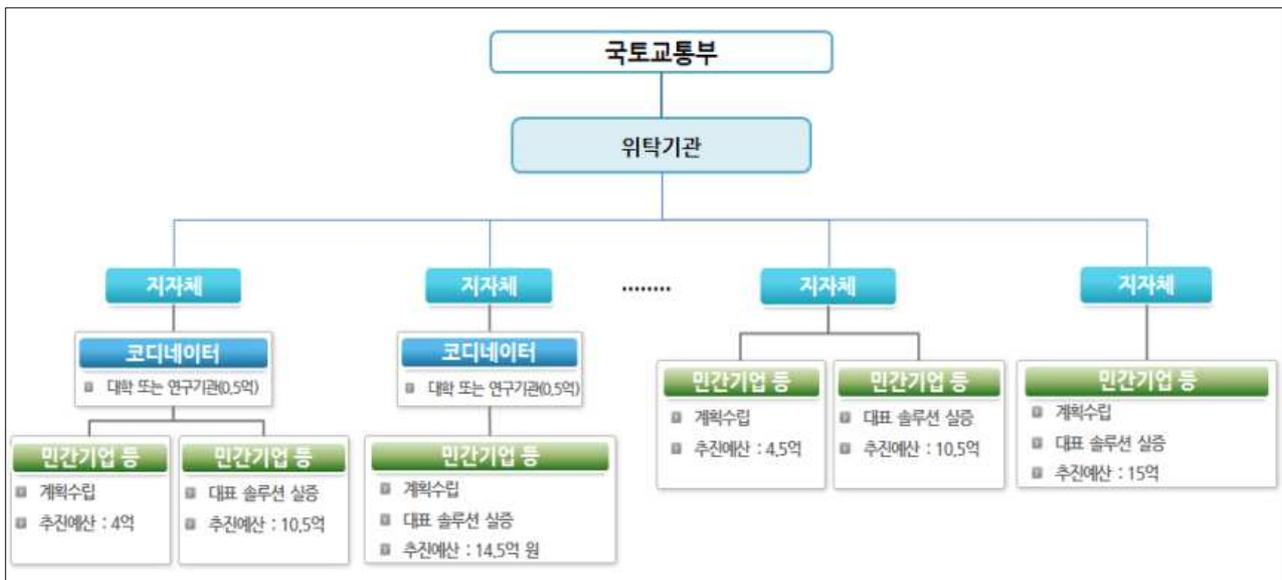
□ 사업지원 규모

- (지원방안) 참여업체(지자체 + 기업 등) 1개소(국비 15억 원)를 선정하여 사업 기획 및 계획수립, 신규 솔루션 접목 및 실증비용 등을 지원
 - 지자체·민간기업·대학 등이 공동 참여하여 사업 추진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주체별 역할과 예산배분 등을 명확화

< (국토교통부 예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예산 배분(안) >

기 관	역 할	예산(억)	비 고
지자체	지자체 사업 총괄	-	-
사업 비용 (15억)	계획 수립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계획 수립	민간기업 등
	대표 솔루션 실증	스마트시티 대표 솔루션 실증	민간기업 등
	기타	계획 및 실증 연계·조정, 기타 운영 등	대학 등

< (국토교통부 예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참여주체 및 역할(안) >



※ 사업주체와 역할, 예산(안)은 예시로서, 각 사업별로 참여주체를 자유롭게 선정하고, 지자체+기업 등에게 배당되는 사업비도 탄력적으로 설정 가능

- [본 사업 추진(국토교통부)] 핵심 솔루션 구현, 민간기업과 구체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1~2곳의 사업지에 본 사업 예산을 '20년에 지원 검토

□ 선정 추진 일정

- 사업계획서 접수('19. 2. 28.까지) → 평가 및 선정('19. 3. 5.예정)

Ⅲ

공모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 방법

-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10명 이내 구성·평가하여 참여업체 1개소 선정
* 공공기관·대학교·학회·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비공개)

- (일시 및 장소) 2019. 3. 5.(화) 14:00~, 인천시청 IDC동 4층 브리핑룸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함.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구분	평가항목	주요 세부 평가항목	배점(100점)					
			배점	최우수 (100%)	우수 (90%)	양호 (80%)	보통 (70%)	미흡 (60%)
계획서 평가 (100점)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 사업의 비전과 목표 및 전략의 적절성, 추진 필요성 · 도시문제 등 현황 파악, 계획설계 과정 의 독창성 및 우수성 · 정량적 성과 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15	15	13.5	12	10.5	9
	시민 중심의 스마트시티 구현	· 시민 의견 반영 수단의 독창성 및 실현가능성 · 계획 및 솔루션 실증 등 단계별 시민참여 역할 및 방안의 구체성	15	15	13.5	12	10.5	9
	거버넌스 구성 등 추진체계 적정성	· 민간기업 등 참여방안 및 유치계획 의 적정성 · 챌린지 사업 추진 거버넌스 체계의 독창성 및 우수성 · 본 사업 추진 시 지자체·기업 등의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20	20	18	16	14	12
	스마트시티 솔루션 구축·실증방 안	· 제시된 대표 솔루션의 우수성과 목표 달성과의 관계성 · 데이터의 확보·연계·통합·활용 적합성 · 제시된 솔루션 실증·접목 방안의 타당성 ·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한 혁신적 기술·서비스 도입 가능성	30	30	27	24	21	18
	사업효과	· 관리·운영 등 지속가능한 사업추진 방안의 구체성 · 실증된 솔루션의 국내외 확산 방안 (상품화·비즈니스 모델 등) · 본 사업 예산 설계의 구체성 확보 방안	20	20	18	16	14	12
가감점	가점	· 스마트시티 챌린지 모범사례 발전 가능성 ·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및 솔루션 사업화·확산 가능성	최대 +3	3	2.7	2.4	2.1	1.8
	감점	· 평가위원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최대 -3	-3	-2.7	-2.4	-2.1	-1.8
합계		100 점 ± 가·감점						

1. 사업계획(안)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 점 처리한다.
3. 사업계획(안)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4.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별 평가 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5 사업계획(안) 평가 시 불참한 참여업체는 “0점” 처리

6. 항목별 배점 기준

가.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최우수(100%), 우수(90%), 양호(80%), 보통(70%), 미흡(60%)로 등급별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되,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IV

향후 추진일정

- 참여업체 사업계획(안) 제출:** ‘19. 2. 26.(화) ~ 2. 28.(목) 16:00시 까지
- 참여업체 평가 및 발표:** ‘19. 3. 5.(수)
 - 평가위원회 평가 후 결과발표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함.
- 국토교통부 응모:** ‘19. 4. 5.(수) 18:00시 까지

V

제출서류 및 양식

양식 1

-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
참여업체(민간기업·대학 등) 선정 공모 신청서

-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
참여업체(민간기업·대학 등) 선정 공모 신청서

신청인	○○업체 대표자○○○	
책임자	○○담당 ○○○ (☎000-000-0000)	
담당자	○○담당자 ○○○ (☎000-000-0000, ooo@korea.kr) ○○담당자 ○○○ (☎000-000-0000, ooo@korea.kr)	
신청 사업	사업명	○○○○ 사업
	분야	예시) 에너지, 환경, 교통, 안전 등
	공동 참여업체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각 11부(원본 1부, 평가용 10부) 2. 파일 원본(USB, CD, DVD 등) 1부	

위와 같이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참여업체 선정 공모에 응모합니다.

2019년 2월 일

○○업체 ○ ○

○ 직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양식 2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계획(안)

공모신청용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계획(안)

2019. 2.

○○업체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계획 요약

※ 2페이지 이내로 작성

참여 민간기관	○○업체	공동참여 민간기관	○○업체
사업명칭	○○○○ 사업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지 개요 ▪ 사업 제안 요약 		
사업목적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 필 요 성 		
사업의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 시민 중심 스마트시티 추진 방안 ▪ 거버넌스 구성 및 추진체계 ▪ 사업 실시 계획 ▪ 대표 솔루션 구축 및 실증 		
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추진의지 및 지원 ▪ 성과 목표 ▪ 사업 확산 및 사업화 방안 ▪ 경제적 파급효과 ▪ 지자체 및 민간 기업의 자원조달 및 투자계획(본 사업) 		
주민, 전문가 등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의견 및 반영사항 작성 		
작성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 ○○○팀·과 (정) ○○담당 직위 성명 (044-000-0000, abc@korea.kr) (부) ○○담당자 직위 성명 (044-000-0000, def@korea.kr) 		

목 차

I. 사업개요 ...		1
1. 사업명		0
2. 사업 대상지 개요		00
[별첨]		
1. ○○○○		00

작성요령

- 표지, 신청서 사본, 지정계획 요약서(2쪽 이내), 목차, 지정계획서 본문(40쪽 이내), 별첨 및 첨부자료 순으로 구성
- 가급적 제시한 목차* 구성과 본문 작성분량(본문 40쪽 이내)을 준수
 - 초과 분량은 별첨으로 별도 제시 (본문에 별첨자료 제목과 해당 페이지 표시)
 - * 예시: ☞ **별첨1** ○○ 협의결과 증빙자료 (000p)
- 응모시 미비 된 자료는 평가위원회 개최 전까지 추가 또는 보완 가능
- 사업계획(안)은 양면으로 인쇄하며, 제책하여 제출 (* 링·스프링 제본 지양)
- 편집 용지(A4) 여백은 왼쪽·오른쪽 각 20mm, 위쪽·아래쪽·머리말·꼬리말 각 10mm로 설정
- 글자 모양은 휴먼명조(글꼴), 13pt(글자 크기), 160%(줄 간격)를 기본
 - 내용에 따라 “○, -, *” 등을 사용하여 개조식으로 작성
 - (예시) ◻○ 휴먼명조 13pt(주요내용)
 - ◻◻◻- 휴먼명조 13pt(세부내용)
 - ◻◻◻◻* 중고딕 11pt(참고사항)
- 이탤릭체 표기(파란색) 부분은 작성 요령 또는 예시이므로 삭제 후 작성

챌린지 사업 계획(안) 목차 구성(안) 예시

※ 본 목차와 작성요령은 예시 및 참고자료로서, 챌린지 사업 평가 기준 등을 감안하여 각 사업주체별로 자유롭게 작성 가능

1. 사업 개요
 - 1.1 사업명
 - 1.2 사업 대상지 개요
 - 1.3 참여업체 및 예산배분
2. 사업 목표 및 전략 설정
 - 2.1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 2.2 지자체 여건 및 역량
 - 2.3 성과목표 설정
 - 2.4 사업 추진의 필요성
3. 시민 중심 추진
 - 3.1 시민 의견 반영 방안
 - 3.2 사업 단계별 시민 참여 방안
4. 거버넌스 구성 및 추진체계 구축
 - 4.1 사업추진 거버넌스 체계
 - 4.2 민간기업 참여 및 유치 계획
 - 4.3 민간자본을 포함한 자원 조달 및 투자유치 계획
5. 사업 실시 계획
 - 5.1 현황 파악
 - 5.2 서비스 및 솔루션 발굴 방안
 - 5.3 사업 관리·운영 방안
 - 5.4 예산 설계 방안
6. 대표 솔루션 구축 및 실증
 - 6.1 대표 솔루션 개요
 - 6.2 데이터 관리 및 활용
 - 6.3 솔루션 실증 방안
 - 6.4 규제 샌드박스 특례·활용 계획
7. 챌린지 사업 효과
 - 7.1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 방안
 - 7.2 솔루션 확산 및 사업화 방안
 - 7.3 경제적 파급 효과 달성 방안

1. 사업 개요

1.1 사업명

※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1.2 사업 대상지 개요

※ 위치/면적 : 대상지에 포함되는 주소(법정/행정동명 등)와 구역계 제시
 일반현황 : 경제 규모, 인구, 산업, 주택, 주거/유동인구 등 각종 통계자료
 위치적 특성, 대상지 주변 주요 공공시설, 문화시설,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 현황,
 대중교통 현황 및 광역교통 이용 용이성 등 대상지 입지여건에 관하여 서술
 위치 현황도를 첨부하며, 해당 도면에 입지여건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표시
 아래 표 형식을 활용하여 추가 정리

사 업 개 요	
사업명칭	
사업위치	
사업면적	
사업기간	
대상지 내 관련 사업 현황	
기타 특이사항(필요시)	

그 외 필요내용은 표 또는 그림을 이용하여 작성

1.3 참여기관 및 예산배분

※ 참여 기관명과 기관별 예산 배분 등을 명시

2. 사업 목표 및 전략 설정

2.1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 비전, 목표, 추진전략 구성도를 구성하여 자유롭게 작성
 (아래 표는 양식으로 참고)

비전	비전		
목표	추진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목표 ▪ 세부목표 		
추진전략	추진전략	추진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2.2 지자체 여건 및 역량

※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실현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자체 역량에 대해 설명

2.3 성과목표 설정

※ 사업의 최종 성과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성과 목표 설정의 근거를 제시
(예시 : 교통 흐름 00% 해소, 에너지 절감 00% 등 정량적 목표 제시)

2.4 사업 추진의 필요성

※ 챌린지 사업의 추진 필요성, 선정의 당위성, 시급성 등을 작성

3. 시민 중심 추진

3.1 시민 의견 반영 방안

※ 리빙랩, 민원데이터, 유동인구 데이터 등 빅데이터 기반, 시민참여 조직 구성 등 성과 달성에 적합한 시민 의견 반영 수단 및 활용 방안 제시

3.2 사업 단계별 시민 참여 방안

※ 문제 발굴, 계획 수립, 운영, 상품화 등 사업 단계별 적용할 시민 참여 방안 제시
필요시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의견조회) 실적과 조치·반영 사항 및 향후 의견수렴 등 계획 작성 (별첨 활용)

4. 거버넌스 구성 및 추진체계 구축

4.1. 사업추진 거버넌스 체계 및 협력방안

※ 챌린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도식화)하고, 업무 분장과 협력방안 등 제시

4.2. 민간기업 등의 참여 및 유치 계획

※ 다양한 주체의 참여방안과 지원책·인센티브 제공계획, 선정 과정(공개모집 등)을 적시 (필요시 별첨 활용)

4.3. 민간자본을 포함한 자원 조달 및 투자유치 계획

※ 본 사업 등 추진 시 적용방안으로, 수행 주체별 / 연도별 자원조달 방안에 대해 표 등을 활용하여 제시,
민간투자 촉진 방안, 투자의향서 및 투자협약서 등 (민간에 구체적 자료가 있는 경우)

5. 사업 실시 계획

5.1. 현황 파악

※ 도시문제 분석,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현황 파악 방안 제시

5.2. 서비스 및 솔루션 발굴 방안

※ 챌린지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서비스 및 솔루션 발굴 방안 제시

5.3. 사업 관리·운영 방안

※ '19년 사업 기획과 대표 솔루션 실증 및 본 사업의 지속가능한 관리·운영방안 제시, 월별·분기별 사업일정 등 포함

5.4. 본 사업 계획 및 예산설계 방안

※ 본 사업 추진을 전제로 사업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예산 설계 방안을 제시
주체별 / 연도별 / 사업별 자원소요 등 포함하고, 표 등을 활용하여 작성

6. 대표 솔루션 구축 및 실증

6.1. 대표 솔루션 개요

※ '19년에 추진 예정인 대표 솔루션에 대한 소개와 기술적 우수성, 혁신성, 특징점 등을 설명

6.2. 데이터 관리 및 활용

※ 대표 솔루션과 지자체 데이터 및 시스템 연계방안, 솔루션을 통한 데이터의 확보·연계·활용방안 등 제시

6.3. 솔루션 실증 방안

※ 대표 솔루션의 접목과 시민 체험 및 피드백 방안 등 제시

6.4. 규제 샌드박스 특례·활용 계획

※ 대표 솔루션 접목이나 본 사업 등 추진시 규제 샌드박스 특례 적용방안 등 제시

7. 챌린지 사업 효과

7.1.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 방안

※ 챌린지 사업(본 사업 포함)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 등 제시

7.2. 솔루션 확산 및 사업화 방안

※ 대표 솔루션 및 본 사업 추진 후 비즈니스 모델 도입 등 사업화 방안 및
국내 타 지자체, 해외 확산 방안

7.3. 경제적 파급 효과 달성 방안

※ 일자리 창출 관련 직·간접 고용 등 고용유발효과 및 근거, 사업 추진시 달라질
지역 미래상과 예상되는 변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제시 (필요시 수치로 제시)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67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인천광역시장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제320348호	케일 주식회사 김 태 신	인천광역시 서구 석곶로 8번길 12, 동성빌딩 2층 (가정동)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68호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장

○ 행정처분 사항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 소재지	법령위반 내 용	행정처분 내 용
제 170185호	(주)오성아이씨티 오 은 정	인천 중구 신도시남로 141번길 7, 신공항프라자 301호(운서동)	정보통신기술자 등록기준 미달	등록취소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69호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장

○ 행정처분 사항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 소재지	법령위반 내 용	행정처분 내 용
제410039호	(주)새길정보통신 김 문 성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448번길 95(고잔동)	정보통신기술자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15일 (2019.1.25.~ 2019.2.8.)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9-33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01월 28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대상 : 불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9.01.28. ~ 2019.02.11(15일간)

5.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불임의 내용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납부는 **6. 납부안내**를 참조하시고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이의제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 까지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6. 납부안내

가. 납부기한 : 2019년 4월 30일까지

나. 납부방법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하시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다. 납부기한이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의제기제출

이의제기는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일까지 팩스(032-440-8818), 우편(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이의제기서 제출 기한 : 2019년 4월 17일

8. 기타 자세한 내용

○ 주 소 :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 문의 전화 :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032-440-5341)

붙 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대상

연번	회계연도	부과번호	대상자	우편물 송달주소	적발차량	과태료 부과일	처분과태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반송사유
1	2018	000583	전**	인천광역시 중구 마시란로 ***** (남북동)	경기98자****	2018.10.25 ~2018.12.31	500,000	2018.06.14 . 14:58	중구 향동 축항대로	속하중1.70톤초과(3속하중11.70톤)	반송 (폐문부재)
2	2018	000605	이**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변길 *****호 (학익동, 유림빌라)	인천990아****	2018.10.25 ~2018.12.31	500,000	2018.06.20 . 08:17	남동구 구월동 용천로	폭0.49미터초과(폭2.99미터)	반송 (폐문부재)
3	2018	000602	황**	인천광역시 부평구 후정동로47 변길 ***** (상산동, 상보아파트)	인천03마****	2018.10.25 ~2018.12.31	300,000	2018.06.20 . 09:01	서구 원창동 목항로	폭0.28미터초과(폭2.78미터)	반송 (폐문부재)
4	2018	000606	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 ***** (원곡동, 벽산블루밍아파트)	서울07나****	2018.08.29. ~2018.10.31	1,000,000	2018.06.20 . 11:00	연수구 옥련동 비류대로	폭0.58미터초과(폭3.08미터)	반송 (폐문부재)
5	2018	000612	김**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로**** (감전동)	대구98바****	2018.10.25 ~2018.12.31	500,000	2018.06.25 . 14:47	중구 향동 축항대로	폭0.49미터초과(폭2.99미터)	반송 (폐문부재)
6	2018	000622	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광로 ***** (기야동)	부산950아****	2018.10.25 ~2018.12.31	500,000	2018.07.03 . 14:45	중구 향동 인중로	속하중1.10톤초과(5속하중11.10톤)	반송 (폐문부재)
7	2018	000661	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45 변길***** (송의동, 롯데탑스빌)	인천07마****	2018.10.25 ~2018.12.31	300,000	2018.07.23 . 13:50	서구 석남동 봉수대로	폭0.25미터 초과(폭2.75미터)	반송 (폐문부재)
8	2018	000687	양**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 ***** (청라동, 청라제일풍경채2차에듀엔파크)	인천07마****	2018.10.25 ~2018.12.31	300,000	2018.07.31 . 09:47	남구 송의동 석정로	폭0.40미터 초과(폭2.90미터)	반송 (폐문부재)

예 규

인천광역시예규(발령)

제 명 : 인천광역시 시장 공약 관리 규정

제정이유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변경, 이행실적 평가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약관리체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총괄부서와 공약사업별 담당자 지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함(제1조~제3조)
- 나.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과 이행, 실천계획 변경 시 각각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함(제4조~제6조)
- 다. 공약평가와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근거를 마련하고 총괄부서와 주관부서 간 직무수행 범위 규정(제7조~제9조)
- 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수립, 변경, 평가 등 공약이행 과정에 시민 및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 함(제10조)

인천광역시 시장 공약 관리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년 1월 28일

인천광역시예규 제467호

인천광역시 시장 공약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인천광역시장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과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공약사업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평가담당관으로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을 검토한 후 주관 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공약사업 실천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⑥ 총괄부서의 장은 최종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 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근거와 사유 등을 포함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계획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실천계획변경을 요청받은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실천계획 변경이 확정된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약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상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 등을 요구하거나,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약사업 이행실적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외부평가)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의 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0조(시민 및 전문가 참여)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수립, 변경, 평가 등 공약이행 과정에 관계 전문가와 시민을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관계 전문가와 시민 참여를 위하여 시민평가단 구성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9-29호

「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1. 제정이유

가. 유아교육법 개정(2016.5.29.)* 에 따른 유아 입학관련 시도 위임조례 제정

* 개정내용: 위임 조항 신설(제11조제2항 및 제3항)

나.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유아 교육의 공공성 제고

다.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사항의 법제화로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모집·선발 보장을 위한 규정 마련

라. 유치원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유아모집·선발에 대한 규정 정비 필요

마. 유아모집·선발의 불공정한 사례*로 인한 학부모 민원 야기와 불편 초래 최소화

* 불공정한 사례: 선착순 모집·선발, 지인 추천자에게 우선권 부여 등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 규정(안 제2조)

다. 조례의 적용 범위 규정(안 제3조)

라. 유아모집·선발 계획 수립·공고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및 포함할 사항 명시(안 제4조)

마. 유치원별 유아 선발 인원 명시(안 제5조)

바. 유치원별 유아모집·선발 요강의 사전 공지 및 교육감이 정한 유아모집·선발 방법 이행에 대한 책무 규정(안 제6조)

사. 조례 시행에 관한 시행규칙 명시(안 제7조)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아. 조례 시행일에 대한 부칙조항 명시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2019년 2월 18일(월)까지 인천광역시교육감(참조: 초등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k2s1five@ice.go.kr

2) 주소: (21554)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 우편제출 시, 마감전 우체국 소인일까지 유효함

3) 팩스: 032-420-8256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032-420-8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law.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 “붙임1”

5. 제정안 : “붙임2”

< 붙임2 >

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집"이란 제4조의 유아모집·선발계획과 제6조의 모집·선발에 따라 입학원서를 신청·접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선발"이란 모집된 유아 중 추천 및 학부모 등록 등을 통해 해당 유치원에 입학 또는 입학 대기할 유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모집·선발계획)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유아모집·선발계획(이하 "선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 및 인원
2.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3.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한 구비서류
4. 유아의 모집·선발 우선순위 대상 및 범위
5. 그 밖에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원장은 유아모집·선발 시 제1항의 선발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선발인원) 유치원별 유아 선발인원은 교육감이 인가한 정원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한다.

제6조(모집·선발) ① 원장은 선발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모집·선발 요강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유아의 모집·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

1. 유아모집·선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경우
2.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취

□ 유아교육법

제11조(입학) ③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는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제2조(정의)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제11조(입학) ② 원장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례에서 모집·선발 시기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 5. 29.>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그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접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정보시스템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3. 21.]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유치원이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원비

인상률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